

기본연구보고서 2016-07

#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류 유 선

## 연구진

연구책임 • 류유선 /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요약 및 정책제안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이주민 유입 역사가 20여년을 넘어가면서, 대전지역의 이주민 규모의 증가와 함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음. 지역주민의 인구학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이 요구됨. 이에 대전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주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결과

- 다문화 관련 공무원 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5명, 그리고 이주활동가 5명, 총 16명의 대전지역의 이주민 현황 및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대전지역의 다문화 혹은 이주민의 특성은 인근 충남지역과 다르게 노동형태와 사회·문화·교육·건강 서비스 인프라 및 접근성 차원에서 ‘도시형’ 다문화로 개념화할 수 있고, 대전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도시형 다문화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유학생에 대한 중장기정책이 필요함.
-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족의 내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별과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도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가족, 난민가족 등 다문화가족의 결합방식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음.
- 증가하는 이주아동들이 공교육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학교문화 적응 프로그램과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현장의 인식개선도 시급함.

- 대전지역의 영세 제조업 및 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 및 이들 가족에 대한 의료·건강·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약하여, 제도 보완 필요.
- 여성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 에 비해 취약함. 법률적 상담이나 심리적 상담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 정책건의

- 결혼이주여성에 집중하는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아동(중도입국자녀, 해외장기체류아동, 난민, 미등록이주아동 등), 이주노동자(미등록 포함), 유학생, 난민 등 대전지역 체류이주민 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학업, 노동, 결혼 등 이주 목적에 상관없이 대전에 체류하는 이주민을 지역민으로 수용하는 포용적 정책의 필요하며,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전지역의 이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중장기 이주민정책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주민 실태조사가 필요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사회의 차이와 다름을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승인하는 지속적인 다문화인식 개선 운동과 이를 위한 지자체 예산의 확보 요구됨.
- 여성 결혼이주민,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유학생 등 여성이주민을 위한 심리상담을 전담할 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 - 목 차 -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	5
1. 연구방법 .....	5
제3절 개념 .....	8
1. 이주민 .....	8
2. 정책대상으로서 이주민 .....	10
2. 연구에서 이주민 개념 .....	13
<b>제2장 이주 관련 담론</b> .....	<b>17</b>
제1절 법과 주권 .....	17
제2절 시민권과 거주권 .....	22
제3절 다문화 관련 정책 .....	29
1. 다문화사회 지원 개요 .....	29
2. 다문화사회 지원의 법적 근거 .....	31
<b>제3장 이주민 현황</b> .....	<b>37</b>
제1절 국내 체류 이주민 현황 .....	37
1. 체류 이주민의 증가 .....	37
2. 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41
3. 결혼이민자 .....	44
4. 유학생 .....	48
5. 난민 .....	50

6. 다문화가정 자녀 .....	52
제2절 대전지역 이주민 인구 동향 .....	53
1. 결혼이주여성 .....	55
2. 이주노동자 .....	56
3. 외국국적동포 .....	58
4. 유학생 .....	60
5. 이주아동 .....	62
제3절 대전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	64
1. 다문화 관련 조직 및 업무 .....	64
2. 이주민 관련 조례 및 규칙 .....	67
3. 2016년 다문화가족정책 대전광역시 세부 시행계획 .....	68
4. 대전지역 이주민 관련 민간 지원 기관 .....	70
5. 대전지역 여성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	73
<b>제4장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의견 .....</b>	<b>79</b>
제1절 다문화 관련 공무원 .....	79
1.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정책 .....	80
2. 다문화 정책 대상의 확대 .....	81
3. 다문화정책의 방향 .....	86
4. 거주권 .....	89
5. 대전의 이주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 .....	89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의견 .....	90
1. 다문화가족의 새로운 현상 .....	91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려움 .....	97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중 영역 .....	102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로 하는 지원 .....	105
제3절 이주활동가 의견 .....	106
1. 대전지역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	107
2.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	110

3.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	113
4. 대전지역 이주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난민, 해외장기체류아동) .....	115
5.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 .....	121
6. 대전지역 다문화의 경계 확장과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 .....	122
<b>제5장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 및 정책제언 .....</b>	<b>131</b>
제1절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 .....	131
제2절 정책제언 .....	134
<b>참 고 문 헌 .....</b>	<b>140</b>

## - 표 목 차 -

<표 1-1> 인터뷰 참여자 현황 .....	7
<표 1-2>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맞춤형 서비스 .....	11
<표 1-3> 정부의 정책대상과 내용 .....	12
<표 1-4> 체류외국인 현황 .....	13
<표 2-1> 시민권 모델 .....	24
<표 2-2> 우수인재 평가기준 .....	30
<표 2-3> 중앙부처의 정책대상과 관련법률 .....	32
<표 3-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	37
<표 3-2> 연도별 체류외국인 출신국 현황 .....	39
<표 3-3> 등록외국인 연도별 현황 .....	41
<표 3-4> 체류자격별 현황 .....	42
<표 3-5> 전문/단순 비교 취업자격 체류이주민 현황 .....	44
<표 3-6> 연도별 결혼이주민 .....	45
<표 3-7> 지역별·연도별 등록 결혼이주민 .....	45
<표 3-8> 국적·연도별 결혼이주민 .....	46
<표 3-9> 지역별·성별 등록 결혼이주민 .....	47
<표 3-10> 연도별 유학생 현황 .....	48
<표 3-11> 국적별 외국인 현황(2016. 6. 30. 현재) .....	49
<표 3-12> 연도별·성별·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	51
<표 3-13> 연도별·성별·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	51
<표 3-14> 전국 연도별 국제결혼가정의 연령별 학생 수 .....	52
<표 3-15> 전국 연도별 및 외국인가정의 학생 수 .....	53
<표 3-16> 대전지역 이주민과 인구 동향 .....	53
<표 3-17> 2015년 행정구역별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	54



<표 3-18> 연도별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	56
<표 3-19> 연도별 이주노동자(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	57
<표 3-20> 남녀별 이주노동자(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	57
<표 3-21>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16. 3월 말 거주자 기준) .....	58
<표 3-2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	59
<표 3-23> 남녀별 외국국적동포(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	60
<표 3-24> 연도별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	60
<표 3-25> 남녀별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	61
<표 3-26> 연도별 외국인 주민자녀 현황 .....	62
<표 3-27> 남녀별 외국인 주민자녀 현황 .....	63
<표 3-28> 대전시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학생 수 .....	64
<표 3-29> 대전시 각 자치구 다문화 업무 현황 .....	65
<표 3-30> 각 센터 주요 사업 현황 .....	65
<표 3-31> 이주민 정책과 사업 내용 .....	68
<표 3-32>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주요 사업 내용 .....	71
<표 3-33> 대전이주이주노동자연대 주요 사업 내용 .....	72
<표 3-34>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사업 내용 .....	73
<표 3-35> 대전이주여성쉼터 주요 사업 내용 .....	74
<표 3-36> 대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사업 내용 .....	74
<표 4-1> 대전지역 다문화 관련 공무원 인터뷰 현황 .....	79
<표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터뷰 현황 .....	91
<표 4-3> 이주활동가 인터뷰 현황 .....	107

## - 그림 목 차 -

[그림 3-1] 체류외국인 추이 .....	38
[그림 3-2] 체류외국인 연령 현황 .....	40
[그림 3-3] 자격별 체류이주민 비율 .....	43
[그림 3-4] 연도별 유학생 증가 추세 .....	49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개념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자본과 상품,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주의 시대’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2013<sup>1)</sup>)에 대전지역에도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은 총 25,190명(여:14,426명/남:10,764명), 대전에 등록된 총인구 1,531,809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전 지역 6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주민이다(행정자치부, 2015년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06년 8,167명이었던 대전 이주민의 수는 2015년 25,190명으로 10년 만에 약 3배가 증가한 셈이다.

공식/비공식적인 이주민의 유입 이래(한건수, 2003), 이주민의 증가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을 자부해 온 한국사회에 인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경제, 문화, 교육, 공동체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성의 문제를 제기하며(김영옥, 2007; 윤인진, 2007; 이용승, 2015), 다문화사회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왔다(장명선, 200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0).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정부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양한 다문화 관련법과 정책, 그리고 사업을 수립·수행해왔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거시적 정책이나 법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잔여적 대상은 발생하기 마련이고(Willem van Schendel and Itty Abraham, 2005),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조건과 맥락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과 사업은 필요하다.

특히 민족중심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된 한국의 다문화 및 사회통합정책은 한국국민과 결혼한 이주여성,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가족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이외 범주의 이주민은 배제해왔다(황정미 외, 2007; 김석호 외, 2011; 최서리 외, 2014). 그러나 체류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이주노

---

1)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일조각.

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와 난민, 이주아동 등 이주민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의 확장 및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장명선, 2008<sup>2)</sup>;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0; 김석호 외, 2011). 특히 지역민들과 직접 대면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산업경제적 특성이나 조건,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특성에 맞게 정책감수성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를 한 신종호와 최석현(2013)은,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2.8%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지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된 이주민 연평균 증가율 9.7%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국내 거주 이주민의 수를 약 50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를 예측한 UN통계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시나리오는 한국이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를 2020년에 3천6백6십만 명(36.6million)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6백4십만 명(6.4million)의 이주민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다(<http://www.un.org/esa/population/publications/ReplMigED/Korea.pdf>, 2016년 3월 30일 검색). 한국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는 인구·사회·경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주요한 경제활동인구가 이주민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은 변화가 먼저 감지되는 지역사회가 앞으로 어떤 정책방향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대전지역 내 체류 이주민의 수와 함께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통합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성, 연령, 인종과 문화 등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라 이주민 수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우복남, 2012<sup>3)</sup>). 이는 혈연과 국가 중심의 다문화정책이 노동력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 학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유학생, 그리고 북한이탈

---

2) 장명선(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 우복남(201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민, 외국국적동포와 난민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김석호 외, 2011; 최서리 외, 2014). 특히 세계화라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노동과 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출현하는 초국적 현상을 국가의 주권이나 국경, 안보가 아니라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널리 퍼져있다(Sassen, 1996,1999; Beck, 2006).

이에 연구는 대전지역의 체류 이주민을 위한 정책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지역 체류이주민의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다. 대전지역의 이주민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야 지역의 인구·사회·문화·경제적 특성을 담은 이주정책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이주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종사자들, 그리고 대전지역을 근거로 하는 이주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이주 연구자들의 자문을 통해 대전지역에 유의미한 이주민정책을 제안코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담은 이주정책의 방향을 대전지역의 체류이주민 현황 파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체류 이주민 현황을 기존 통계 및 정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펴고 있는 공무원, 센터 종사자,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 이주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와 이동의 시대에 대응하는 글로벌한 대전 이주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이주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이다. 문헌연구로는 이주민 관련 통계자료와 이주와 다문화 관련 담론과 이론을 분석했다. 대전지역의 객관적 자료를 통계에 의존하면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인터뷰로 보충했다. 구술자와 라포(rapport)<sup>4)</sup>를 중요시하는 인류학적 연구에서 심층면접은 현지조사의 일부로 참여관찰에 비해 비중이 적다(윤택림, 2005<sup>5)</sup>).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이라기보다는 인터뷰가 더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인터뷰 참여자는 지역의 다문화 관련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가, 지역 이주활동가들이다.

인터뷰는 6명의 관련 공무원, 5명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가, 그리고 5명의 이주활동가로 총 16명으로 이뤄졌다. 인터뷰는 면접자들이 근무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장소에서 수행되었고, 면접자들의 상황에 따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가량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 기초통계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와 통계월보를 사용했다. 행정자치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주민현황조사’가 2016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지역연구에서 참조하는 앞의 조사를 기다리기에는 연구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 □ 문헌연구

본 연구는 기본과제로 진행되었다. 기본과제는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문헌연구는 ‘이주’라는 국경을 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에 대한 이론과 주권 개념을 논쟁하는 법 담론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시민권과 거주권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

4) 라포는 “감정이입, 상호 신뢰, 이해, 공감대, 우정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라포는 측량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 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이다.”(윤택림, 2005: 139).

5) 윤택림(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아르케.



## □ 심층면접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 그리고 이주활동가들의 현황과약과 의견이다.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과 대면 접촉이 많은 현장 담당자들을 의견을 고루 듣기 위해 관련 공무원, 관련 센터 종사자, 시민영역의 활동가 영역에서 총 16명을 인터뷰했다.

**<표 1-1> 인터뷰 참여자 현황**

구 분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일정
다문화 관련 공무원	A	2016년 9월 20일
	B	2016년 9월 21일
	C	2016년 9월 21일
	D	2016년 9월 22일
	E	2016년 9월 22일
	F	2016년 9월 23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G	2016년 9월 26일
	H	2016년 9월 28일
	I	2016년 9월 29일
	J	2016년 9월 30일
	K	2016년 10월 6일
이주활동가	L	2016년 10월 14일
	M	2016년 10월 14일
	N	2016년 10월 14일
	O	2016년 10월 17일
	P	2016년 10월 17일

## 제3절 개념

### 1. 이주민(Migrant)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는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으로 이주민을 정의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국제이주와 국내이주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국제이주는 국내이주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온 이주민을 다루는 본 연구가 개념화하려는 이주민은 앞의 개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요구한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이주민(migrant)을 살던 곳에서 떠나 이동하고 있거나 이동한 사람으로 국내와 국제를 굳이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이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이주기구는 개별 국가들이 국내 이주민들을 구분하고 대상화하는 법적 지위나 이주방식과 원인, 이주 동기 및 체류기간 등을 이주민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sup>6)</sup>.

다른 국제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국제이주자(International migrants)를 “국민이 아닌 나라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 (persons who live temporarily or permanently in a country of which they are not nationals).” (UNESCO, 2003<sup>7)</sup>)으로 정의하면서 ‘이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맥락으로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 유럽연합(Council of Europe)은 “개인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곳에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살며, 그 나라에 상당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 any person who lives

---

6) (<https://www.iom.int/key-migration-terms>, 2016년 4월 19일 검색), Migrant - IOM defines a migrant as any person who is moving or has moved across an international border or within a State away from his/her habitual place of residence, regardless of (1) the person's legal status; (2) whether the movement is voluntary or involuntary; (3) what the causes for the movement are; or (4) what the length of the stay is. IOM concerns itself with migrants and migration-related issues and, in agreement with relevant States, with migrants who are in need of international migration services.

7)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35/143557e.pdf>

temporarily or permanently in an country where he or she was not born, and has acquired some significant social ties to this country” 으로 이주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UN은 이주민을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에 관련된 사람 -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으로 노동행위와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경제활동을 이주민의 개념에 주요하게 삼고 있다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international-migration/glossary/migrant/>, 2016년 4월 18일 검색).

한국의 법은 혈통과 소속을 중심으로 국민과 비국민을 명확히 나누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과 그 외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출입국관리법]이 인식하고 있는 법의 대상은 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난민으로 분류된다. 외국인은 “대한국민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이고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sup>8)</sup> 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는 재한외국인을 “대한국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인 결혼 이민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 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합법적 외국인을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성순, 2013<sup>9)</sup>).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

8) 출입국관리법 제2조 2항, 난민법 제2조 1항.

9) 이성순(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저(A.Ager)와 스트랭(A. 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 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정부가 규율하는 취업분야와 체류기간에 어긋나지 않는 소위 ‘합법’ 이주민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가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이들과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24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sup>10)</sup>을 의미한다.

[국적법] 제2조는 출생<sup>11)</sup>과 인지<sup>12)</sup>, 귀화<sup>13)</sup>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거주민은 국민과 비국민으로 분류되고, 국민이 되기 위한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자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민이라는 법적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이 주요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 2. 정책대상으로서 이주민

한국에서는 다양한 중앙부처가 다문화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를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이성순, 2013).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에서는 밝히고 있는 기본방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집중

---

10)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국적법에서 국적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 있다.

1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2)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13)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귀화의 요건을 말한다.

되어 있고,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갖고 있다.

**<표 1-2>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맞춤형 서비스<sup>14)</sup>**

단계	생애주기	주요 교육	전단계
1	입국 전 결혼준비기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2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	자녀양육 및 정착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4	역량강화기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특히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도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지역정착과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은 이민자와 재한외국인을 정책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무부는 사회통합의 대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인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정책대상은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sup>15)</sup>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이민정책으로 분석한 이해경(2008)<sup>16)</sup>은 정책 대상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1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2016년 3월 29일 검색.

15) 법무부의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 2016년 3월 29일 검색.

16) 이해경(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104-137.

한다.

**<표 1-3> 정부의 정책대상과 내용<sup>17)</sup>**

주요정책	정책대상	정책목표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책	(외국인여성+한국인남성) 가족과 그 자녀	-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방안	- 국내 혼혈인 - 국외혼혈인 - 국내외국인	- 사회통합을 넘어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 외교, 경제 인력 양성
-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외국국적동포 - 결혼이민자 - 외국인여성 - 외국인의 자녀 - 난민 -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외국인 - 국민	- 외국인 인권존중, 사회통합 - 우수외국인력유치지원
-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 합법체류외국인	- 다문화포용, 사회통합 - 경쟁력강화 - 인권보장 - 정책수립체계

그러나 이해경(2008)이 지적했듯이, 한국의 이민정책은 포섭과 배제의 정책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주요 정책은 포섭의 대상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 이민정책은 혼선을 겪게 된다. 이주노동자정책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책사이에서, 결혼이민자정책은 가족정책인가 이민정책인가 사이에서 각 부처가 갈등을 하기도 했다.

최근 신중호와 최석현(2013)<sup>18)</sup>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책대상인 결혼이주여성보다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자녀, 외국국적동포가 규모면에서 더 큼을 보여주며,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2013년 외국인 근로자가 36%, 외국인자녀가 13.2%, 외국국적동포가 13%로 결혼이민자 10.2%로 높은 비율임을 보여준다.

17) 이해경(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립현상-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118 재구성.

18) 신중호·최석현(2013),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 이슈&진단 제118호:1-25.

**<표 1-4>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 자격별	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취업 (H-2)	재외 동포 (F-4)	영 주 (F-5)	유 학 (D-2)	거 주 (F-2)	기타
인 원(명)	1,899,519	276,042	285,342	328,187	123,255	66,334	38,881	781,478
비 율	100.0%	14.5%	15.0%	17.3%	6.5%	3.5%	2.0%	41.1%

\*국민의 배우자로 불리는 결혼이주민은 2009년 이전에 F-1-3이나 F-2-1로 체류자격을 얻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F-2-1과 F-5-2로, 2011년부터는 F-2-1과 F-5-2, F-6의 자격을 얻는다.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5년 12월호

이주민 관련 위원회의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고 출국 및 입국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 가족들의 복지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등 이주노동자 이슈를 다루고 있다.

### 3. 연구에서 이주민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충원하기 시작한 1961년 전체 인구의 1.2%였던 독일의 외국인 수는 1980년에 7.4%, 1990년대 후반에는 9%로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 12월 기준 외국인등록부의 외국인 수는 약 719만 명, 전체 인구의 8.7%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인과 외국인만을 구별했던 독일은 2005년 처음으로 인구조사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자’ 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주의적 관점에 변화를 주었다. 이주배경을 가진 자는 “1949년 이후 독일로 이주한 사람,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 가운데 부모가 독일로 이주했거나 외국인인 사람 모두” 를 의미한다(고상두·하명신, 2012: 240<sup>19</sup>). 즉 독일에서는 독일인인가 외국인인가라고하는 이분법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주민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19) 고상두·하명신(2012),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집제5호: 233-256.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주민을 “자신이 태어났거나 또는 본래 살던 국적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이동해 정착한 사람” 혹은 “자신이나 부모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이주를 경험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최혜지 외, 2012<sup>20</sup>)으로 결혼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 난민, 그리고 이주아동을 이주민의 범주로 유형화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범주로 이주민을 분류하면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전수와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두으로써 동화주의에 집중해왔다(장명선, 2008; 황정미 외, 2007<sup>21</sup>). 그러나 이주민은 이주 목적과 방식뿐만 아니라 국적, 성별, 인종, 계급과 젠더 등 다양한 내적 스펙트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즉 이주민을 수용하는 한국사회의 맥락과 목적뿐만 아니라 이주자 개인의 생애기획과 이주자를 둘러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범주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주배경을 가지고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회통합 혹은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민권의 개념으로 대전지역 체류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여기서 주민권은 “체류자격 내지는 법적지위, 개인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단지 그/녀가 해당 지역(local)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와 지위, 정체성(이용승, 2015:3)”을 말하며 주민은 지역의 주민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sup>22</sup>. 따라서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제외한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모든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sup>23</sup>.

---

20) 최혜지 외(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1)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2) 이용승(2015),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 이주인권지역토론회-이주민 지역사회통합 현안과 인권 쟁점(2015년 11월 13일 토론회 자료집), 3-19.  
23)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의는 담고 있지 않다. 연구의 인터뷰참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나 ‘이주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파악은 까다롭다는 것이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이었다.



## 제 2 장

### 이주 관련 담론

---

제1절 법과 주권

제2절 시민권과 거주권

제3절 다문화 관련 정책

---



## 제 2 장 이주 관련 담론

### 제1절 법과 주권

영토와 국민,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후 동질적인 문화와 이에 대한 전통과 역사는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사회통합의 주요한 요소로 작동해 왔다(심승우, 2013<sup>24</sup>). 동일 영토 내 거주하는 국민들은 시민적 권리를 갖고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주요한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전부터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심승우, 2010). 자본과 상품,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언어화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된 1990년대 이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국가의 경계와 국민의 범주, 그리고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주 및 이주민과 관련한 주권과 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권에 대한 최초의 정의자로 인용되는 장보댕(2005:41-42<sup>25</sup>)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으로, 주권자를 “예외적인 권리”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보댕은 주권을 신법과 자연법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칼 슈미트(2010: 17)<sup>26</sup>는 “공공적 혹은 국가적 이익,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공후생 등이 관건이 되는 갈등상황(칼 슈미트, 2010:17)”을 누가 예외상태라고 결정하는가에 대한 논쟁만 있었다고 본다. 법이 예외상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권문제를 예외상태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결정의 문제로 인식했다. 따라서 칼 슈미트는 “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지만 예외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 예외가 규칙을 보증할 뿐 아니라, 규칙은 애당초 오로지 예외에 의해서만 존속한다. 예외 속에서

24) 심승우(2013),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175-205.

25) 장 보댕(2005), 국가론, 임승휘옮김, 책세상.

26) 칼 슈미트(2010), 정치신학, 김향역, 그린비.

실제 삶의 힘은 되풀이됨으로써 굳어버린 기계장치의 껍데기를 깨부술 수 있다 (2010:27-8)” 라며 주권개념의 중심에 예외상태를 놓고, 이를 통해 국가와 법의 관계를 파악하려 했다.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 효력을 정지당하는 위기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예외상태로 결정하는 주권자에 의해 표면적으로 “법은 후퇴하는 반면 국가는 계속 존립(칼 슈미트, 2010:25)” 하는 상황에서 칼슈미트는 법의 유동성을 간파했다. 법질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반면에 새로운 상황이 출현하는 순간 법은 정지되고, 주권자가 결정한 예외상태를 지배할 새로운 법의 출현이 요구되는 맥락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상황에 따른 법’이다.” 라는 칼 슈미트 (2010:25)의 규정은 주권의 본질이 “강제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임을 설명한다. 즉 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법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지만 예외상태라는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개 사건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통해 늘 새로운 결정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주권과 법이 칼 슈미트에 의해 법과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세속화되었다며, 푸코는 주권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푸코(2002)<sup>27)</sup>는 주권자의 이익과 요구에 의해 주권과 사법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구조를 지배와 예속에 대한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주권자가 주권 자체가 되고 주권이 사법체계와 법이 되어버리는 과정, 지배관계를 유통시키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이런 장치를 통해 예속관계가 내재화되는 사회를 분석하는 것을 권력분석의 핵심으로 본다. 즉 푸코는 주권과 권력의 분석에서 사회에서 정치가 말살된 통치, 개인 스스로가 권력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통치성을 포착해 냈다.

아감벤은 푸코의 자아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를 “개인을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의식에 결박시켜주는 동시에 외부의 통제 권력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주체화과정(아감벤, 2008:40<sup>28)</sup>)” 으로 보고, 개인의 몸과 일상에 권력구조가 미세하게 스며들도록 작동하는 체계가 바로 주권의 원기능이라고 본다.

---

27) 미셸 푸코(2002),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옮김, 동문선.

28) 조르조 아감벤(2008),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출판사.

주권을 개인의 삶을 통치하는 사회적인 것으로 본 푸코의 통치성과 유사하게, 아감벤(2009)은 주권을 정치적인 것 및 법과 구분하면서 사회로 확장한다. 법과 정치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예외상태를 국민국가, 주권이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전과 봉기, 레지스탕스와 같은 소위 주권의 자기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에는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이런 예외상태가 주권국 내의 정치적 위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상태는 법의 영역이 아닌 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아포리아에 빠지게 된다.

아감벤은 “예외상태는 법질서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를 정의하는 문제는 진정 하나의 문턱 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식별하지 못하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다. 규범의 효력정지는 규범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으며, 규범의 효력정지가 만들어내는 아노미의 영역은 법질서와의 관계를 잃지 않는다(2009:52)<sup>29)</sup>.” 라고 본다. 아감벤에게 예외상태는 기존 법률의 지배를 받지 않거나 혹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한다. 따라서 예외상태는 “적용과 규범이 둘 사이의 분리를 드러내고, 하나의 순수한 법률-의-힘에 의해 적용이 정지되어 있던 규범이 실현되는(즉 탈-적용되면서 적용되는)하나의 공간이 열리는 사태(아감벤, 2009:82).” 로써 새로운 상황을 기대하는 ‘문턱’ 인 셈이다.

국민국가가 직면한 이주라는 초국적 현상에서 만난 이주민에게 주권의 문턱은 높다. 국가의 영토를 넘어온 이주민은 타자로 규정된다. 칼 슈미트는 국가 개념에서 정치적 적은 도덕적으로 악할 필요도, 미적으로 추할 필요도, 경제적으로 경쟁자일 필요가 없는 “타인, 이질자이며, 그 본질은 특히 강한 의미에서 존재적으로 어떤 타인이며 이질자(칼 슈미트, 1992: 32)” 로 정의한다. 나와 다른 것은 사회의 규범에 따르지 않고, 사회의 일부가 되거나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반역할 가능성을 갖는다는 관념이 상징체계로 진입하면서 타인은 적 혹은 범죄자가 된다.

한국사회와 혈연으로 연결된 이주민을 제외한 이주민들은 사회통합의 대상이 될

---

29) 조르조 아감벤(2009), 예외상태, 김항욱김, 새물결출판사.

수 없고 성원권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썬해지지 않는 인구이자 보호되지 않는 인구이다.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 인 썬이다.

현대사회의 정치적 대상이 되고 있는 ‘벌거벗은 생명’의 범주와 기원을 추적하는 아감벤(2008:34)은 인간의 삶이 중요해지는 순간은 단순한 생명(조에, zoe)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라는 특정한 삶의 양식(비오스, bios)”이 될 때로 본다. 인간이 인간으로 인정받는다든 것은 살아 있는 생명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정치적 의미를 가질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조에’가 사회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정치화되는 특이한 현상이 출현했다고 아감벤은 분석한다.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국가에 의해 썬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치는 “생명-정치적 존재, 조에-비오스, 배제-포함(아감벤, 2008:45)”라는 이항대립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아감벤은 조에들이 국가 권력구조에 들어와서 생명정치가 탄생한다는 푸코의 주장을 반박한다. 오히려 법질서 외부에 있던 ‘조에’들의 공간이 “정치 공간과 일치하기 시작(아감벤, 2008:60)” 했다는 것이다.

아감벤은 알랭 바디우를 빌어, 귀속(현시)되고 포함(재현)되는 정상과 귀속(현시)되지 않고 포함(재현)되는 이상증식, 그리고 귀속(현시)되고 포함(재현)되지 않는 특이로 개인을 분류한다. 주권적 예외의 개인들은 현시되지만 재현되지 않는 특이로 규정한다. 존재하지만 썬해지지 않는 주권적 예외들은 영토를 근거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을 통해 본다면, 영토 안에 현시하고 있지만 재현되지 않는 다양한 주민들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아감벤(2008)은 주권자의 결정을 법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합법과 위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사회의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권자는 사회의 모든 생명을 규율하지 못하는 법의 외부성이 출현하는 순간에 예외상태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의 주권적 구조는 누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외부인 예외상태를 법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주권의 장이 된다.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에 복종하는 삶이란 가장 무고한 몸짓 또는 최

소한의 망각조차도 극히 끔찍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예외상태의 삶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아감벤, 2008:126).” 법이 다양한 개인들의 구체적 삶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년 6월 국내 체류이주민의 수가 2백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장기체류이주민의 수는 1백4십8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한국사회에서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수적 증가를 의미한다(심승우, 201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획득해서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는 2015년 말, 759,079명이고, 방문취업(H-2)이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E-9)등을 통해 약 5년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이주민의 수도 382,917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유학이나 연수 등 장기체류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16, 2016년도 6월호 통계월보).

이처럼 다양한 범주의 체류 이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법적 배경은 외국인을 준적국인으로 인식하는 법의 입장에서 권리보다 의무와 통제를 많이 담고 있고(최홍엽, 2007), 이주민은 불쌍한 존재, 잠재적 범죄자나, ‘떠나갈 존재’, 이방인으로 이미지화된(심승우, 2013).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저렴한 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단기노동자로서 체류가능하지만, 이주민의 영구정착은 허가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이주민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민이나 시민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국가주의적 관점이 한국법과 제도에 담겨있다(심승우, 2013).

자유로운 이동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이주의 시대에, 국경과 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틀은 도전받고 있다(세일라 벤하비브, 2008; 낸시 프레이저, 2010)<sup>30)</sup>. 주권에 대한 다양한 상상, 그리고 시민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여러 논쟁들은 초국적 경제체제와 갈등하고 있는 국민국가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

30) 낸시 프레이저(2010), 지구화시대의 정의-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 옮김, 그린비; 세일라 벤하비브(2008), 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이상훈 옮김, 철학과 현실사.

## 제2절 시민권과 주민권

공식적인 이주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정부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다문화담론을 전유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정책, 제도와 법을 생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에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과 맥락, 과정이 삭제되면서, 법과 제도, 정책의 중심에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과 결혼하는 자에게 국적취득, 재외동포에게 가사노동 분야의 우선권을 준다(마이크 더글라스, 2010). 즉 혈통과 국가중심의 관점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한국국민의 재생산으로 수렴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민으로 포섭할 기준과 범주를 마련하고, 이 이외의 이주민을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 의 모순(liberal paradox)’ 이다(이혜경, 2008; Holifield, 1992 재인용). 이런 이유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주민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심승우, 2010).

20세기와 21세기를 이주국가(migration state)라고 부르는 홀리필드(Hollifield, 2004<sup>31</sup>)의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부를 최대화하기 위해 국경개방에 대한 경제적 힘과 사회의 통합성 유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경폐쇄를 요청하는 정치적 힘 사이의 모순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 이주의 역사가 긴 유럽의 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 이주정책에 유연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주노동자(guest worker) 순환을 통해 이주민의 정착을 막던 이주정책이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를 부추긴다는 반성을 통해 2004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했다(Hollifield, 2004).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활동

---

31) 홀리필드는 베스트팔렌조약 하에서 국가들을 수비국가(Garrison state)로 규정하는 데, 그 이유는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면서 국민과 영토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최대화하는 엄청난 책임을 가진 유일한 행위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이후 산업혁명 이후, 국가의 물질적 부와 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를 개방하고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는 경제적 기능이 강화시켰던 국가는 무역국가(trading state)로 명명한다. 이후 상업과 금융 등에서 무역국가의 성장이 촉발한 국제정치경제에서 이주(사람의 이동)가 중요해진 국가들은 이주국가(migration state)로 불린다.



인구의 부족은 이주민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이혜경, 2010).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캐나다의 경우 2017년에 3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기로 했다.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침으로 이민의 수를 확대한 것이다(연합뉴스, 2016.11.1.).

이주와 세계화가 세계 각국의 인구·경제·사회·문화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스티븐 카슬&마크 밀러, 2013), 이는 또한 개별국가의 주권 및 이와 연관된 법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엄순영, 2010). 이런 변화를 국민국가 내부의 경제와 정치사이의 갈등(Hollifield, 2004)이나 국민국가의 약화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헬드, 1994; 사센, 1996), 오히려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다른 관점도 있다(스티븐 카슬&마크 밀러, 2013). 이주와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속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나 난민은 이주민 범죄의 증가나 불법체류자의 증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고,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국경 봉쇄 등 이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주국들은 국민으로 편입되는 시민으로 인정하는 성원권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국경을 강화함으로써 이주를 아예 막거나 이주노동의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이주민의 수를 조절하고, 국적취득의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함으로써 국민으로 편입되는 이주민을 고르는 것이다.

시민권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내의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면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에 상응한 일련의 제도가 존재한다.”<sup>32)</sup> 여기서 문제는 스티븐 카슬과 마크 밀러가 지적했듯이, 시민권의 내용이 아니라 취득의 조건과 과정이다. 스티븐 카슬과 마크 밀러는 시민권의 모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32)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93쪽.(Baubock, 1991:28 재인용).

〈표 2-1〉 시민권 모델<sup>33)</sup>

모 델	내 용
제국모델	- 동일한 권력이나 지배자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 여부를 정의 - 다종족적 제국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관점
민족(종족) 모델	- 종족성(공동의 조상, 언어, 문화)에 근거하여 국민여부를 규정하는 모델 - 소수자들을 시민권 혹은 국민공동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관점
공화주의 모델	- 헌법, 법률과 시민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공동체로 국민을 정의하는 모델 - 이주민들이 이주국의 법과 문화를 수용할 경우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관점
다문화주의 모델	- 공화주의 모델과 유사하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시민권에 기반을 둔 정치공동체의 일원을 국민으로 정의 - 이주민은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종족공동체 유지 가능
초국가적 모델	-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다층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모델 - 시민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든 넘지않든 새로운 권력 형성에 참여할 위치를 보장하는 관점

부모 가운데 한쪽이 한국인 경우를 주된 국민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삼고, 한국문화의 적응과 동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제국모델과 민족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민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에 이주민 관련 조항이 편입되는 등 새로운 사법적 맥락이 형성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난민법, 외국인보호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포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1958년에 제정된 법률이 2010년 처음으로 개정됨),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1998년 제정) 등이 그 예로, 법들은 법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

33) 스티븐 카슬&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93-95 요약.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이주민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민국가는 시민권을 중심으로 통합의 범주를 결정하고 있다(심승우, 2013). 그러나 이주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국민국가의 시민권 틀은 도전받고 있다(세일라 벤하비브, 2008; 낸시 프레이저, 2010). 따라서 시민권에 대한 논쟁은 초국적 경제체제와 국민국가의 주권의 갈등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넘어서는 민족과 인종에 대한 담론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주민의 시민권 문제는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이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지만,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이는 다문화현상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국민국가의 국민 재생산을 위한 다문화가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규모와 변인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체류 지원이나 관리를 넘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으로써 인권적 차원과 사회통합의 차원을 아우른 각각의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이끄는 이민정책이 요구된다(심승우, 2013: 177).

한국에서 이주는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귀환,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정책담론의 주요 대상은 국제결혼이주로, 그 이외의 범주는 다문화논의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주민 200만명을 넘어서는 한국사회가 변화와 변동의 압력을 외면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주된 전통의 근거로 삼고 있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범주에 대한 확장의 요구는 2007년 한국이민학회의 설립이나 2009년 IOM이민정책정책연구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sup>34)</sup> 또한 각 지역사회에서는 조례 등의 제정 혹은 재정을 통해 다문화정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지구적 경제통합과 이주민의 증가라는 흐름에 대한 한국사회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이주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시민권은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주민의 수

---

34) IOM이민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법무부, 경기도와 고양시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특별협력을 통해 설립되었다.

가 증가하는 수용국의 경우, 누구를 국민 혹은 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특히 이 문제는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엄격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국적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는 심승우(2013)는 개방성을 강조한다.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공간과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동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서보건, 2013).

따라서 주권이 국적보유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필요도, 역사적 관점의 국민이 “같은 법 아래에서 생활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 국가의 모든 주민” 이라면, 국민이 곧 국적보유자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라면 국가와 국적, 국가와 국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셈이다. 국민 범주의 확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권의 보장관점에서 ‘장래의 국민’ 을 고려한다. “현재는 국적법상 국민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이상 체재하고 있으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영주권자 등 일정한 범위의 대상자에게 그 나라의 체재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 까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서보건, 2013: 297, 313<sup>35)</sup>).

최근에는 보충적 출생지주의<sup>36)</sup>와 이중국적의 허용, 귀화절차의 간소화, 영주권 전치주의의 간소화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의 출현에서 기인한 다문화 담론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안으로 시작된 결혼이주여성정책으로 수렴되면서 국적이나 시민권 논의는 결혼이주민으로 한정되었고, 이주노동자 등의 이주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타자로 관리의 대상에 머물렀다(심승우, 2013). 특히 미등록이주민은 이주 목적이나 이주 기간 동안의 경험과 한국사회에 대한 기여,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단속과 추방의 단속이 되고 있다.

35) 서보건(2013),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연구 제13호, 293-320.

36) 부모가 분명치 않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자국에서 출생했을 때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

이주민, 특히 합법 혹은 불법이라는 범주에 대해 서보건(2015)은 민주사회는 사회의 인민(시민)에 의해서 통치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표권과 정치적 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외국인에게 줘야하며,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까지 시민으로 포용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언을 인용하며,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주장한다(서보건, 2015:316).

이와 같은 이주민에 대한 포섭과 배제, 통합과 단속, 그리고 국적과 추방으로 범주화하는 국민국가의 시민권 개념은 증가하는 이주의 시대에 “유연한 시민권, 지구적 시민권, 초국가적 시민권, 코즈모폴리탄 시민권, 후기 국가적 시민권 등과 같이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민권 개념으로 대체(최병두 외, 2011: 71)<sup>37)</sup>” 되고 있다. 이주민이나 비주류인들이 경험하는 사회, 정치, 문화, 경제적 배제와 차별이 시민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권의 확장이 관용적이며 개방적인 민주사회에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

이주의 시대에 개인의 정체성은 국민국가 내에서만 형성되기 어렵다. 초국가적 네트워크 위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이제 시민권은 주권이 아니라 보편인권의 개념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한국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최병두 외, 2015; 심승우, 2013; 서보건, 2015). “민주적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규정은 입헌적 자기창조의 지속적 과정”이라는 벤하비브(2008: 44)는 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주가 일상화되고 전지구적이 되면서, 국민과 비국민,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고, 최근에는 ‘의사시민권’을 보장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여기서 의사시민권은 “확실한 체류 자격, 일하고 직장을 찾고 사업을 영위할 권리, 사회 보장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 집회와 결사의 권리 등 제한된 정치적 권리(스티븐 케슬&마크 밀러, 2013:95-96)” 로써 외국인과 국민 사이의 법적 지위인 셈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주민권’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용승(2014:198, 2015:4)은 주민권을 “체류자격 내지는 법적 지위, 개인적 성향, 사회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단지 그/녀가 해당 지역(local)의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인정되어

---

37) 최병두 외(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야 하는 권리와 지위, 정체성이 있다” 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은 이주민들이 일하고 거주하며 구체적으로 세입자로서 임대료, 전기세와 수도세, 가스비를 지불하며, 노동자로서 임금을 받고, 주민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김현미·류유선, 2013). 따라서 주민권은 국민이나 비국민이나, 합법적 이주민이나 미등록이주민이나, 혹은 영구거주 이주민이나 단기거주이주민이나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의 생산과 재생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의 모든 거주민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하는 권리와 지위가 된다.

이주의 시대에 베스트팔렌조약<sup>38)</sup>을 근거로 하는 국가의 국민개념에 대한 재사유와 재구성은 필요하다. 그것이 유연한 시민권이든, 코스모폴리탄적 시민권이든, 주민권이든 보편인권과 정의의 내용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세일러 벤하비브의 정의로운 성원권은 우리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난민과 망명자들의 임시입국(first admittance)에 대한 도덕적 요청을 인정하고, 이민자들에 대해 수용적(porous) 국경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적 박탈(denationalization)과 시민권의 강제적 몰수를 금지해야 하고, 또한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즉, 어떤 지위의 정치적 성원인가와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소지하는 법적 인격(legal person)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기본권 가운데 하나를 박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성원권은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의 경우 시민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세일러 벤하비브, 2008: 25-6).

---

38) 독일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주권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유럽이 정치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음(두산백과).

### 제3절 다문화 관련 정책

#### 1. 다문화사회 지원 개요

국민과 시민, 주민이 별다른 차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사회에서 국민 개념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혈통과 민족, 국가를 단일시했던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의 등장으로 인해 인구학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당황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문화주의를 급히 채택했다(김영옥, 2007<sup>39</sup>). 윤인진(2007)<sup>40</sup>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8년 대략 89만 명이었던 체류외국인의 수가 2015년 1백89만 명을 넘음으로써 연평균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 6월말 현재, ‘외국인 200만 시대’가 열렸다<sup>41</sup>).

체류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 관련 지원정책과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결혼이주민과 그들의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시작된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을 의미하고,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의 복지에 치중하는 성격이다. 이와 같이 민족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좁은 다문화정책은 광범위한 이주민을 포함하는 이민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나 ‘결혼이민자정책’ 등 정책대상과 의미가 부처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심승우, 2013).

특히 중앙부처별 업무와 정책대상에 따라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사 사업으로 인한 정책의 비효율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가 외국인의 출입 및 체류에 대한 관리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외

39) 김영옥(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자오가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 46권 2호:129-159.

40)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담보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기타간행물, 251-291.

4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6월호 표지.

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리를, 교육부는 다문화 및 외국인 자녀의 교육지원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1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귀화와 복수국적을 허용을 판단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과학과 경제, 문화와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국경과 시민권을 개방한 것이다<sup>42)</sup>. 나아가 법무부는 2015년부터는 이공계 분야의 외국 유학생들이 출신국의 국적을 유지하며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귀화 기준을 완화했다.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되었고, 한해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기존에 외국국적 동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일반 외국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표 2-2> 우수인재 평가기준<sup>43)</sup>**

일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u>5년</u> 이상 재직경력자 등	4년제 대학 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u>2년</u> 이상 재직경력자 등
첨단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국내기업 등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 <u>5배</u> 이상인 자	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국내기업 등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1인당국민총소득 <u>3배</u> 이상인 자
첨단기술 특허출원자로서 그 소득이 <u>3억원</u> 이상인 자	첨단기술 특허출원자로서 그 소득이 <u>1억원</u> 이상인 자
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	

그러나 위와 같은 시민권의 개방은 특정 범주에 한정되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와 노동력감소를 대비할 구체적인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민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적 이중국적 허용은 개방성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국경강화로 이해된다. 이주민들의 이중

42) 법무부 보도자료, 2011년 2월 16일자, “법무부, 우수외국인 재선정을 위한 국적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우수인재 평가기준 마련”.

43) 법무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0일자,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인용.



국적 현상을 분석한 이철우(2008:47)는 이주 및 이주민 증가에 따라 주권이 탈국가화 되면서 글로벌시민권이 발전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오히려 이중국적이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게 주권의 재영통화전략으로 사용되며, 이것을 오히려 국민국가의 주권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인 네이션과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영토, 그리고 그 집단과 영토를 관리하는 권력의 집합체” 라는 국민국가에 대한 신화가 이주의 일상화가 만들어내는 국가와 영토의 불일치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만들어내는 전략이 이중국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기 거주 유형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은 중앙정부가 이주민 정책 형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 받고 있다. 즉 다문화 관련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 탑다운(top-down)방식의 접근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Lee, Sang Ji, 2015<sup>44</sup>).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과 달리 지역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고, 이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책과 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예산과 안정적인 인력이 필요하다(Lee, Sang Ji, 2015).

## 2. 다문화사회 지원의 법적 근거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무부가 소관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은 차별방지, 인권옹호 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문화 교육,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보장 등을 적시하고 있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도는 귀화나 인지

---

44) Lee, Sang Ji(2015),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Local-based Migrant Policy, IOM MRTC Working Paper Series. No. 2015-06.

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과 출생과 귀화, 인지로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과 결합한 가족 구성원의 가족생활 및 삶의 안전성 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결혼 이주자의 사회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건강관리와 검진, 통번역서비스, 아동보육과 교육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와 관리, 외국인 근로자 선발 규모와 업종 등을 다룬다.

**<표 2-3> 중앙부처의 정책대상과 관련법률**

부처명	정책대상	관련법률
총리실	- 다문화사회지원 정책 총괄조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 다문화가족 자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무부	- 재한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 등
행정자치부	- 재한외국인 - 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 가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거주 결혼여성이민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 중개업 관리법률 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은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농림수산업부는 농촌거주 결혼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식의 정책과 지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만 하는 집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민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존재,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식 문화와 교육을 배워야 할 교육대상으로 단일화한다.

그러나 한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교육과 노동, 결혼, 출산과 양육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동시에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특정범주만을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비효율성을 감지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경함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감소와 노동력부족의 문제는, 나아가 가까운 국가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지방소멸<sup>45)</sup>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은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혹은 우수인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

45)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김정환 옮김, (주)미래엔.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일본 대다수의 도시가 사라지고 대도시만 남게 되는 극점사회를 예고하며, 젊은 여성들이 많은 도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분석하고 있다.



## 제 3 장

### 이주민 현황

---

제1절 국내 체류 이주민 현황

제2절 대전지역 이주민 인구 동향

제3절 대전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



# 제 3 장 이주민 현황

## 제1절 국내 체류 이주민 현황

### 1. 체류 이주민의 증가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12월호<sup>46)</sup>는 2015년 12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99,51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 1,066,273명에서 2016년 6월 2,001,828명으로 10년 만에 1.9배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인구 비율의 4%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사회에서 대략 27명 가운데 한명이 외국인임을 보여준다.

<표 3-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명)

연 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2005년	747,467	510,509	236,958
2006년	910,149	660,607	249,542
2007년	1,066,273	800,262	266,011
2008년	1,158,866	895,464	263,402
2009년	1,168,477	920,887	247,590
2010년	1,261,415	1,002,742	258,673
2011년	1,395,077(2.75%)	1,117,481	277,596
2012년	1,445,103(2.84%)	1,120,599	324,504
2013년	1,576,034(3.08%)	1,219,192	356,842
2014년	1,797,618(3.50%)	1,377,945	419,673
2015년	1,899,519(3.69%)	1,467,873	431,646
2016년 6월	2,001,828	1,481,603	520,225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6월호 15쪽 재구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계. 옆 가  
로 안의 비율은 인구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임(2015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6페이

46) <https://www.immigration.go.kr> 사이트, 통계자료실, 통계월보.

지 참조)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공식·비공식으로 한국에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6월 드디어 국내 체류이주민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200만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법무부, 2016<sup>47)</sup>).

구체적으로 2016년 6월 체류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외국인 1,137,736명, 외국국적동포 343,867명으로 장기체류자가 1,481,603명, 단기체류자는 520,225명으로 총 국내체류외국인의 수는 2,001,82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증가추이는 아래 [그림 3-1]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91만명 가량 머물렀던 외국인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인구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 체류외국인 추이



자료: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6월호

4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6월호, 3쪽.



체류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연도별 체류 외국인 출신국 현황을 살펴보면(〈표 3-2〉 참고), 체류이주민의 상당수가 아시아지역이고, 아시아 지역의 이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은 조선족과 중국계로 나타난다.

〈표 3-2〉 연도별 체류외국인 출신국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년	2016년 6월
총 계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01,828
중 국 <sup>48)</sup>	698,444	778,113	898,654	955,871	1,012,273
한 국 계	447,877	497,989	590,856	626,655	626,537
미 국	130,562	134,711	136,663	138,660	155,495
베 트 남	120,254	120,069	129,973	136,758	143,394
타 이	45,945	55,110	94,314	93,348	92,406
필 리 핀	42,219	47,514	53,538	54,977	54,019
우즈베키스탄	34,688	38,515	43,852	47,103	52,793
캄 보 디 아	24,610	31,986	38,395	43,209	45,597
인도네시아	38,018	41,599	46,945	46,538	44,387
일 본	57,174	56,081	49,152	47,909	37,960
네 팔	18,908	22,015	26,790	30,185	32,336
몽 골	26,461	24,175	24,561	30,527	33,931
타 이 완	30,413	27,698	31,200	30,002	32,834
러시아(연방)	11,361	12,804	14,425	19,384	29,367
스 리 랑 카	22,354	23,383	26,057	26,678	26,937
캐 나 다	23,051	23,655	24,353	25,177	26,493
미 얀 마	9,218	12,678	15,921	19,209	21,498
방글라데시	13,584	13,600	14,644	14,849	15,121
파 키 스 탄	10,027	10,423	11,209	11,987	12,413
인 도	8,317	9,174	10,196	10,414	11,144
오스트레일리아	10,093	12,203	12,468	12,303	11,052
영 국	6,814	7,998	7,398	7,275	7,821
홍 콩	5,958	7,144	10,762	13,506	13,234
뉴 질 랜드	4,240	4,310	4,593	4,744	4,138
기 타	52,390	61,076	71,555	78,906	85,185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도 6월호 통계월보

48) 한국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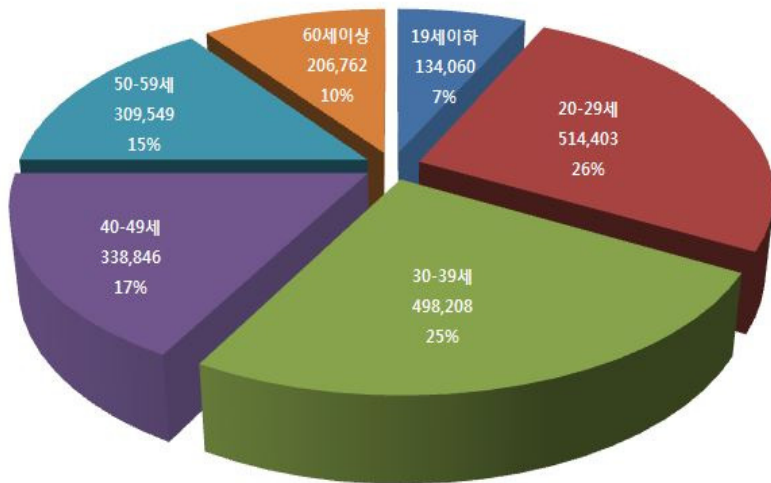
특히 2012년 이래로 2016년 6월까지 비교해보면, 타이, 러시아, 미얀마와 홍콩 출신의 이주민은 두 배 가량, 우즈베키스탄과 캄보디아,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도 상당히 증가했다. 거의 모든 국적의 이주민 수가 증가한 반면에, 일본과 뉴질랜드 출신의 이주민의 수가 줄어든 것은 독특하다.

[그림 3-2]에서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26%(514,403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5%(498,208명), 40대 17%(338,846명), 50대 15% (309,549명), 60대 이상 10%(206,762명), 10대 이하 7%(134,0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50%이상이 가장 생산력이 좋은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 가능한 연령대인 40대와 50대까지 합하면, 국내 체류이주민의 84%가 생산가능이주민이다. 향후 인구감소와 노동력부족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84%에 달하는 생산가능 이주민의 비율은 이주민정책이 고려해야할 단서를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체류외국인 연령 현황

(단위: 명)



그러나 체류이주민에 대한 현황분석에 있어서 체류이주민의 인원수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이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며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국내로 들어와 거주지역의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정보 접근이 가능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이주민에 관한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체류이주민의 현황은 등록외국인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의 통계월보에서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2백만을 넘겼으나, 2016년 6월 등록외국인의 수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등록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인 원	870,636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37,736
증감률	101.9%	105.5%	106.9%	95.0%	105.7%	110.7%	104.7%	-0.5%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도 6월호 통계월보

## 2. 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 이주민의 증가는 체류자격 전분야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관광, 요양, 친지방문, 행사나 회의 참여, 연수, 학술 자료 수집 등의 사증면제나, 관광통과, 혹은 단기방문과 같은 단기체류가 증가하는 한편, 유학과 취업, 재외동포 등 장기체류를 요하는 전 분야에서도 체류이주민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 및 방문동거,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크게 증가했고, 관광통과와 단기종합 자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과 유학, 일반연수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도 늘고 있다(<표 3-4> 참고).

<표 3-4> 체류자격별 현황<sup>49)</sup>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사증면제(B-1)	36,639	41,934	47,890	93,619	95,427
관광통과(B-2)	88,976	91,324	87,908	96,113	104,287
단기종합(C-3)	68,104	123,630	131,951	146,357	154,105
단기취업(C-4)	679	377	460	593	685
유학(D-2)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기술·일반연수 (D-3,4)	41,143	26,049	26,653	30,507	35,307
종교(D-6)	1,592	1,557	1,770	1,855	1,727
주재(D-7)	1,646	1,563	1,659	1,593	1,492
기업투자, 무역경영 (D-8,9)	11,877	11,976	14,325	14,882	13,160
교수, 회화지도, 연구 (E-1,2,3)	27,621	27,054	25,664	23,808	21,901
예술홍행, 특정활동(E-6,7)	18,643	21,979	23,153	24,271	25,223
비전문취업(E-9)	234,295	230,237	246,695	270,569	276,042
선업취업(E-10)	9,661	10,424	12,163	14,403	15,138
방문동거(F-1)	45,092	52,674	60,927	71,203	85,759
거주(F-2)	138,418	63,362	39,704	37,504	38,881
동반(F-3)	17,607	18,795	20,150	21,809	22,652
재외동포(F-4)	136,702	189,508	235,953	289,427	328,187
영주(F-5)	64,979	84,140	100,171	112,742	123,255
방문취업(H-2)	303,368	238,765	240,178	282,670	285,342
기타(G-1, 등)	60,619	145,725	198,194	202,436	204,615

자료: 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7쪽 표 2-3, 체류외국인자격별·연도별 현황을 재구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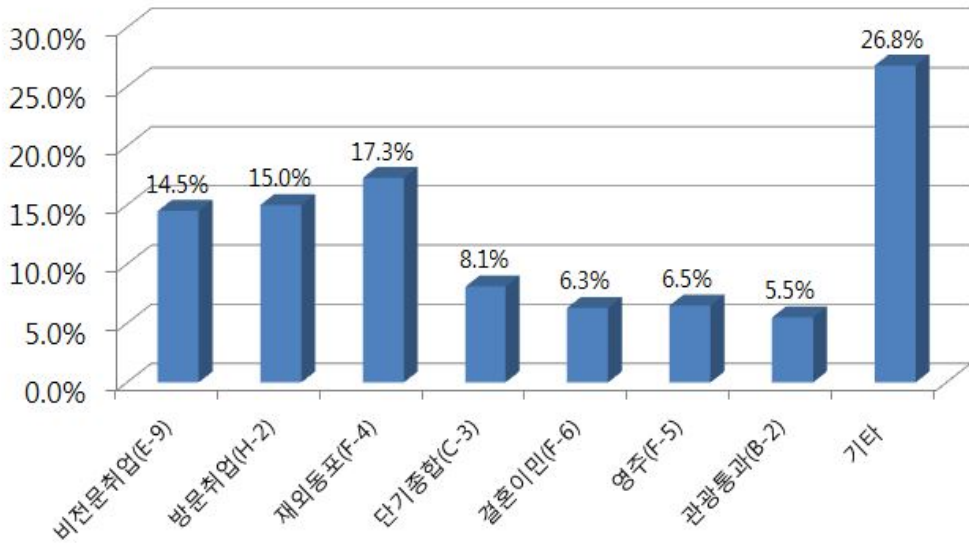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비율이 17.3%로 가장 높고, 방문취업과 비전문취업이 각각 15.0%와 14.5%로 높다. 한국어연수 및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만8천명이었던 한국어연수생 및 유학생은 2015년 9만6천명으로 늘었다. 결혼이민자는 2011년 14만5천명에서 2015년 15만 2천명으로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다. 특히 아직은 6.5%의 비율을 보이는 장기거주를

49) 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7쪽 표 2-3, 체류외국인자격별·연도별 현황을 재구성한 것임

목적으로 하는 영주는 2011년 6만5천명에서 2015년 12만 3천명으로 4년 만에 거의 2배로 확장되었다(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이처럼 장기체류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만으로는 정책적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체류 이주민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다문화 정책의 범주 확장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림 3-3] 자격별 체류이주민 비율



자료: 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노동력분야에서 비전문취업과 선원, 방문취업 등 더럽고 어려우며 위험한, 일명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에 취업하는 단순기능인력의 증가세는 명확하다(2011년 54만7천명에서 2015년 57만 7천명으로 늘었다). 반면에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예술홍행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2014년 대비 2015년 체류이주민의 수는 감소했고, 기술지도와 특정 활동

에서만 약간 명이 증가했다(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표 3-5> 전문/단순 비교 취업자격 체류이주민 현황**

(단위: 명)

		2014년 체류자	2015년 체류자
계		617,145	625,129
전문 인력	소 계	49,503	48,607
	단기취업	593	685
	교 수	2,664	2,612
	회화지도	17,949	16,144
	연 구	3,195	3,145
	기술지도	186	192
	전문직업	645	606
	예술홍행	5,162	4,924
	특정활동	19,109	20,299
단순 기능 인력	소 계	56,642	576,522
	비전문취업	270,569	276,042
	선원취업	14,403	15,138
	방문취업	282,670	285,342

자료: 법무부,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3. 결혼이민자

2002년 이후 28%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수는 2013년 이후 주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0.7%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151,608 명으로 전년대비 0.4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의 감소는 이미 결혼이주민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2013년에 법무부가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sup>50)</sup>.

법무부가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발급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5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10월 10일 발표한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안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입국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국어 수준과 한국배우자의 경제력을 주로 보고 있다.

갖춘 한국인과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국제결혼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는 국제결혼의 수적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표 3-6> 연도별 결혼이주민**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결혼이민자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자료: 법무부,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49쪽, [표3-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재구성

<표 3-6>이 보여주고 있는 결혼이주민의 수와 아래 <표 3-7>에서 보여주는 결혼이주민의 수에는 차이가 난다. 위의 표가 입국한 결혼이주민의 총수라면, 아래 표는 거주 지역에 등록된 결혼이주민의 수이다. 거주하는 지역이 드러나지 않는 결혼이주민의 수는 2011년 467명이었다가, 2012년 907명으로 일 년 만에 두 배가 증가했고, 2014년에는 1,829명으로 3년 만에 네 배가 증가했다. 2015년 1,736명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2011년의 3.7배가 증가했다.

**<표 3-7> 지역별 · 연도별 등록 결혼이주민**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4,214	147,591	149,764	149,165	149,872
경기도	38,953	40,208	41,293	40,919	41,403
서울특별시	31,217	30,775	29,818	29,000	28,240
경상남도	9,133	9,288	9,514	9,570	9,826
인천광역시	8,202	8,486	8,794	8,883	9,126
충청남도	7,413	7,570	7,905	7,856	7,896
경상북도	7,109	7,470	7,673	7,718	7,648
부산광역시	6,498	6,619	6,824	6,846	6,931
전라남도	6,758	6,861	6,830	6,861	6,737
전라북도	5,765	5,795	5,858	5,825	5,955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구광역시	4,241	4,514	4,731	4,853	4,895
충청북도	4,511	4,696	4,738	4,758	4,784
강원도	3,837	3,865	3,828	3,784	3,684
대전광역시	3,359	3,440	3,515	3,496	3,501
광주광역시	2,966	3,089	3,164	3,250	3,309
울산광역시	2,627	2,751	2,947	3,049	3,242
제주특별자치도	1,625	1,803	1,945	2,079	2,171
세종특별자치시	-	361	387	418	524

자료: 법무부,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53쪽, [표3-5] 지역별·연도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현황 재구성

<표 3-8>에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결혼이주자의 국적·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네팔 출신의 결혼이주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타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출신의 결혼이주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8> 국적·연도별 결혼이주민

(단위: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44,681	148,498	150,865	150,994	151,608
중 국	64,173	63,035	62,400	60,663	58,788
베트남	37,516	39,352	39,854	39,725	40,847
일 본	11,162	11,746	12,220	12,603	12,861
필리핀	8,367	9,611	10,383	11,052	11,367
캄보디아	4,583	4,541	4,650	4,618	4,555
미 국	2,410	2,653	2,845	3,006	3,192
타 이	2,603	2,618	2,643	2,675	2,821
몽 골	2,393	2,395	2,368	2,394	2,384
우즈베키스탄	1,840	2,017	2,141	2,219	2,244
러시아	1,319	1,328	1,305	1,308	1,305
캐나다	1,158	1,240	1,268	1,300	1,295
네 팔	840	1,027	1,112	1,138	1,081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파키스탄	720	787	874	889	915
기 타	5,597	6,148	6,802	7,404	7,953

자료: 법무부,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50쪽, [표3-3] 국적·지역별·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재구성

<표 3-9>에서 지역별 결혼이주민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서울과 경상남도 순이다. 경기도와 서울에 결혼이주자의 약 46%가 거주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일 적은 수의 결혼이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수는 증가세에 있지만, 서울과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2015년에 감소했다.

결혼 이주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주결혼이주자의 약 85%가 여성으로,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표 3-9> 지역별·성별 등록 결혼이주민**

(단위: 명)

광역시도	계	남자	여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지역별 구성비율
계	149,872	23,107	126,765	15.40%	84.60%	100.00%
경기도	41,403	7,614	33,789	18.40%	81.60%	27.70%
서울특별시	28,240	7,430	20,810	26.30%	73.70%	18.90%
경상남도	9,826	1,006	8,820	10.20%	89.80%	6.60%
인천광역시	9,126	1,517	7,609	16.60%	83.40%	6.10%
충청남도	7,896	680	7,216	8.60%	91.40%	5.30%
경상북도	7,648	574	7,074	7.50%	92.50%	5.10%
부산광역시	6,931	932	5,999	13.40%	86.60%	4.60%
전라남도	6,737	229	6,508	3.40%	96.60%	4.50%
전라북도	5,955	324	5,631	5.40%	94.60%	4.00%
대구광역시	4,895	632	4,263	12.90%	87.10%	3.30%
충청북도	4,784	468	4,316	9.80%	90.20%	3.20%
강원도	3,684	246	3,438	6.70%	93.30%	2.50%
대전광역시	3,501	395	3,106	11.30%	88.70%	2.30%

광역시도	계	남자	여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지역별 구성비율
광주광역시	3,309	316	2,993	9.50%	90.50%	2.20%
울산광역시	3,242	409	2,833	12.60%	87.40%	2.20%
제주특별자치도	2,171	267	1,904	12.30%	87.70%	1.50%
세종특별자치시	524	68	456	13.00%	87.00%	0.30%

자료 : 법무부,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4. 유학생

유학생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 동안 소폭 감소한 이후로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6년 6월말 현재 101,601명으로 전년대비 16.9%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유학생의 증가 추이는 아래 [그림 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연도별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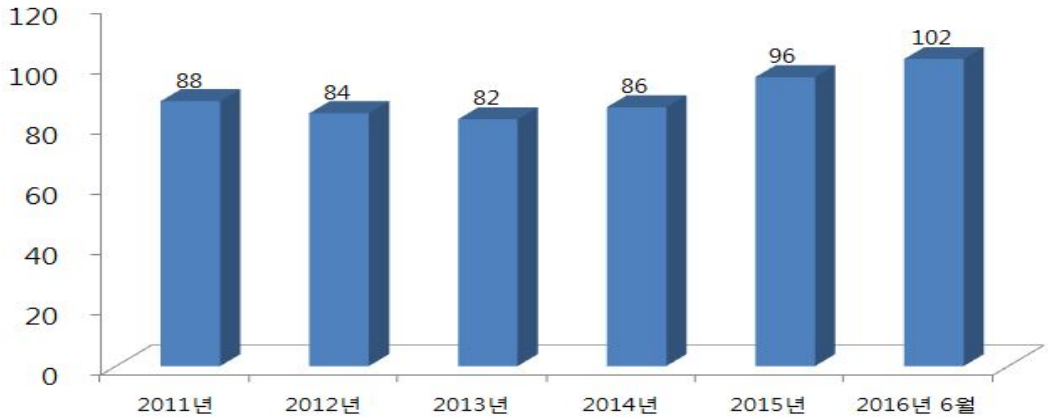
(단위: 명)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합 계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01,601
유 학 (D-2)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68,992
한국어연수 (D-4·1)	20,429	20,681	21,381	25,138	30,017	32,605
외국어연수 (D-47)	-	-	-	15	6	4
전년대비 증감률	1.1%	-4.2%	-3.4%	5.6%	11.5%	16.9%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6월호 통계월보, 28쪽 재구성

[그림 3-4] 연도별 유학생 증가 추세

(단위: 천명)



\*유학생

- 2009년 이전: D-2(유학) 및 D44(한국어연수)
- 2010년 이후: D-2(유학) 및 D41(한국어연수), D47(한국어연수)

자료: 법무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8쪽 [그림2-1]연도별 유학생증가추세 재구성

외국인 유학생은 총 101,601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60,443명(59.5%), 베트남 10,421명(10.3%), 몽골 5,436명(5.4%), 일본 2,517명(2.5%) 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11> 국적별 외국인 현황(2016. 6. 30.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유학(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총 계	101,601	68,992	32,605	4
중 국 <sup>5)</sup>	60,443	42,504	17,939	0
한 국 계	242	228	14	0
베 트 남	10,421	4,049	6,372	0
몽 골	5,436	2,602	2,834	0
일 본	2,517	1,753	764	0
우즈베키스탄	1,742	1,093	649	0

구 분	총 계	유학(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인도네시아	1,331	1,141	190	0
파 키 스 탄	1,201	1,105	96	0
인 도	1,146	1,056	90	0
미 국	1,055	903	151	1
말레이시아	989	782	207	0
타 이 완	889	605	284	0
방글라데시	776	727	49	0
카자흐스탄	700	560	140	0
러시아(연방)	694	461	233	0
네 팔	690	585	105	0
필 리 핀	679	554	125	0
프 랑 스	645	589	56	0
홍 콩	555	321	234	0
기 타	9,692	7,602	2,087	3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년 6월호 통계월보.

## 5. 난민

난민신청자는 2014년 2,896명으로 2012년 1,143명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남자가 2,403명(83.0%), 여자가 493명(17.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2014년 난민신청자 2,896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집트 568명(19.6%), 파키스탄 396명(13.7%), 중국 360명(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1) 한국계 포함

〈표 3-12〉 연도별·성별·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

(단위: 명)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143	1,574	2,896
성 별	남 자	1,039	1,366	2,403
	여 자	104	208	493
국 적	파키스탄	242	275	396
	예멘공화국	309	34	130
	나이지리아	102	207	201
	이집트	43	97	568
	시리아	146	295	204
	중 국	3	45	360
	카메룬	32	77	107
	우간다	56	28	84
	방글라데시	32	45	62
	기 타	178	471	784

자료: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비해 난민인정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난민 인정자 총 94명의 성별 분포는 남성 62명(66.0%), 여성 32명(34%)이었으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에디오피아 43명(45.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연도별·성별·국적별 난민인정자 현황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3	36	70	47	42	60	57	94
성 별	남 자	5	26	51	31	27	39	35	62
	여 자	8	10	19	16	15	21	22	32
국 적	미얀마	6	18	33	13	24	18	19	4
	방글라 데시	5	1	21	7	2	16	10	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콩고DR	2	9	1	3	6	4	1	3
	에티오피아	0	2	6	2	0	4	3	43
	기 타	0	6	9	22	10	18	24	42

자료: 법무부

## 6. 다문화가정 자녀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증가하였는데, 2015년도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수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2년 3,083명에서 2015년 7,41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외국인가정 학생 수는 2012년 대비 2015년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수는 3배 이상, 고등학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전국 연도별 국제결혼가정의 연령별 학생 수

(단위 : 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소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2012	31,951	29,282	2,669	9,179	8,194	985	3,083	2,536	547
2013	35,829	32,823	3,006	10,305	9,162	1,143	4,358	3,793	565
2014	44,808	41,546	3,262	11,702	10,316	1,386	6,312	5,562	750
2015	54,156	50,191	3,965	12,443	11,054	1,389	7,411	6,688	723

〈표 3-15〉 전국 연도별 및 외국인가정의 학생 수

(단위: 명)

	외국인가정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2	1,789	448	326
2013	3,531	975	500
2014	3,417	804	422
2015	6,006	1,384	735

- 주 1.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자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함. 단,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로서, 부모의 이혼 후 재혼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생긴 경우는 제외함. 중도입국자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로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모(부)와 재혼하여 부모와 함께 또는 중도에 입국한 자녀를 말하며, 외국인 부모의 한국 국적 취득여부는 관계가 없음
2.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를 말함(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제2절 대전지역 이주민 인구 동향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대전지역의 인구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대전 총인구는 1,547,609명까지 상승했다가 2016년 3월에는 1,533,837명으로 2년여 동안 14,072명의 주민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증감추세에 있어서 이주민을 범주로 분석해 보면 대전지역민들의 전출과 이주민의 전입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6〉 대전지역 이주민과 인구 동향

(단위: 명)

연도	합 계			한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9	1,498,665	749,880	748,785	1,484,180	743,121	741,059	14,485	6,759	7,726
2010	1,518,540	760,406	758,131	1,503,664	753,648	750,016	14,876	6,761	8,115

연도	합 계			한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1	1,530,650	765,986	764,664	1,515,603	759,188	756,415	15,047	6,798	8,249
2012	1,539,154	770,190	768,964	1,524,583	763,671	760,912	14,571	6,519	8,052
2013	1,547,609	773,863	773,746	1,532,811	767,309	765,502	14,798	6,554	8,244
2014	1,547,467	73,412	774,055	1,531,809	766,497	765,312	15,658	6,915	8,743
*2015	1,544,063	771,530	772,533	1,528,090	764,495	763,595	15,973	7,035	8,938
**2016	1,533,837	766,165	767,672	1,517,118	58,806	758,312	16,719	7,359	9,360

자료: 대전광역시, 제54회 통계연보

\*2015년 1/4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대전광역시, 대전의 통계

\*\*2016년 1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 대전광역시, 대전의 통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한국인은 201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주민의 유입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인구감소추세가 201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과 비교해 2014년 한국인주민의 수가 1,002명 줄었다면, 2015년에는 3,719명, 2016년 3월까지 11,082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한국인 주민의 감소세를 늦춰준 것은 외국인주민, 이주민의 꾸준한 증가로 분석된다. 2012년 대전시민 104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주민은 2016년 3월 90명당 한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표 3-17>참고), 2015년 대전지역의 이주민은 총 20,456명으로 추산된다. 2015년 대전시민 대비로 보면, 약 대전시민 75명당 1명의 이주민이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표 3-17> 2015년 행정구역별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단위: 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대전시	2,564	1,195	446	4,685	2,620	2,733	1,119	1,425	1,542	2,127	20,456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동 구	333	226	84	1,045	724	919	113	175	234	336	4,189
중 구	233	151	56	870	61	25	151	194	259	304	2,304
서 구	491	332	125	1,167	386	527	273	358	342	445	4,446
유성구	794	316	112	656	1,341	1,142	418	538	528	791	6,636
대덕구	713	170	69	947	108	120	164	160	179	251	2,881

자료: 통계청, 결혼이민자와 기타외국인은 한국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를 모두 합한 것임.

대전시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유성구(6,6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결혼이주여성

대전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대전지역 결혼이주 여성은 총 3,328명이었고, 이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전체인원의 22.9%이며,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여성이 취득한 여성에 비해 3.3배 정도로 많았다.

이후 2015년에는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은 4,685명으로 증가하였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전체인원의 34.3%로, 2009년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여성이 취득한 여성에 비해 1.9배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서구로 1,167명(24.9%)으로 나타났으며, 동구 1,045명(22.3%), 대덕구 947명(20.2%), 중구 870명(18.6%), 유성구 656명(14.0%) 순임을 알 수 있다.

〈표 3-18〉 연도별 국제결혼 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 계	미취득	2,567	2,587	2,971	3,024	3,090	3,141	3,079
	취득	761	1,000	1,124	1,353	1,426	1,545	1,606
동 구	미취득	622	609	679	688	688	695	671
	취득	173	217	228	270	297	335	374
중 구	미취득	533	516	607	596	602	586	586
	취득	182	188	222	258	262	279	284
서 구	미취득	646	667	734	739	767	782	767
	취득	178	255	269	334	354	383	400
유성구	미취득	319	333	425	447	473	491	482
	취득	98	133	169	193	196	209	174
대덕구	미취득	447	462	526	554	560	587	573
	취득	130	207	236	298	317	339	374

주: 한국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구분

자료: 행정자치부

## 2. 이주노동자

대전지역의 이주노동자는 감소와 증가 추세가 반복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9년 4,342명이었으나 2015년 3,759명으로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지역은 점차 이주노동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성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유성구 1,110명(29.5%) 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적은 행정구역은 중구 384명(10.2%)이었다. 유성구 다음으로 대덕구 883명(23.5%), 서구 823명(21.9%), 동구 559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9> 연도별 이주노동자(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 계	4,342	4,092	3,917	3,992	3,641	3,624	3,759
동 구	699	646	619	609	529	498	559
중 구	496	418	430	431	367	365	384
서 구	1,103	1,021	892	917	845	811	823
유성구	942	985	994	1,059	1,040	1,089	1,110
대덕구	1,102	1,022	982	976	860	861	883

자료: 행정자치부

대전지역 남녀별 이주노동자의 수(<표 3-20> 참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전체 이주노동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남자 이주노동자의 수는 2,564명(68.2%)으로 2009년 대비 3.9%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대전지역 각 행정구역별 남녀별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비율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행정구역은 대덕구로 남자 713명(80.7%), 여성 170명(19.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남자 794명(71.5%), 여자 316명(19.3%)이고, 중구가 남자 233명(60.7%), 여자 151명(39.3%), 서구가 남자 491명(59.7%), 여자 332명(40.3%)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행정구역 중 남녀 비율의 차이가 가장 적은 행정구역은 동구 지역으로 남자 333명(59.6%), 여자 226명(40.4%)이었다.

**<표 3-20> 남녀별 이주노동자(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소 계	2,791	1,551	2,713	1,379	2,573	1,344	2,643	1,349	2,469	1,172	2,476	1,148	2,564	1,195
동 구	382	317	353	293	351	268	357	252	320	209	292	206	333	226
중 구	285	211	238	180	260	170	241	190	212	155	224	141	233	151
서 구	637	466	612	409	500	392	535	382	505	340	478	333	491	332
유성구	663	279	715	270	691	303	747	312	759	281	789	300	794	316
대덕구	824	278	795	227	771	211	763	213	673	187	693	168	713	170

자료: 행정자치부

<표 3-21>에서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북한이탈주민 거주 인원은 2016년 3월말 현재, 총 26,833명으로 남자 7,372명(27.5%), 여자 19,461명(72.5%)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로 7,836명(29.2%)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은 6,845명(25.6%)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원의 50%이상이 서울·경기 수도권에 밀집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대전지역에는 남자 134명(25.3%), 여자 396명(74.7%)으로 총 53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표 3-21>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2016. 3월 말 거주자 기준)**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자	2,307	2,013	713	278	240	253	159	196	271
여자	4,568	5,823	1,793	706	780	761	544	825	931
합계	6,875	7,836	2,506	984	1,020	1,014	703	1,021	1,202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자	141	174	134	156	116	163	58	7,372	
여자	433	501	396	451	400	373	176	19,461	
합계	574	675	530	607	516	536	234	26,833	

\*사망, 말소, 이민, 주소불명,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자료: 통일부

### 3. 외국국적동포

대전지역의 외국국적동포는 2009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2,544명으로, 2009년 대비 27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지역 자치구 모두 매년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행정구역별 외국국적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유성구 956명(37.6%)으로 나타났으며, 서구 361명(24.8%), 중구 345명(13.6%), 대덕구 324명(12.7%), 동구 288명(11.3%) 순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표 3-2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 계	927	1,078	1,557	1,841	2,074	2,205	2,544
동 구	63	73	106	147	190	228	288
중 구	112	113	168	203	238	274	345
서 구	264	302	383	458	517	576	631
유성구	441	526	803	892	923	865	956
대덕구	47	64	97	141	206	262	324

자료: 행정자치부

외국국적동포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9년 대전지역 외국국적동포 전체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398명(42.9%), 여자 529명(57.1%)로 여자가 더 많았고, 2015년도 남자는 1,119명(44.0%), 여자는 1,425명(56.0%)로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09년 대비 남녀 각각 2.8배,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외국국적동포의 남녀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남자비율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대덕구(51.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서구(44.7%), 동구(44.4%), 유성구(41.7%), 중구(39.3%) 순이었다. 2015년에는 대덕구(50.6%), 중구(43.8%), 유성구(43.7%), 서구(43.3%), 동구(39.2%) 순으로, 대덕구 지역이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동구지역은 외국국적동포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표 3-23> 남녀별 외국국적동포(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소계	398	529	470	608	692	865	845	996	920	1,154	980	1,225	1,119	1,425
동구	28	35	32	41	44	62	61	86	86	104	98	130	113	175
중구	44	68	48	65	73	95	89	114	100	138	113	161	151	194
서구	118	146	145	157	178	205	215	243	240	277	268	308	273	358
유성구	184	257	211	315	349	454	399	493	380	543	364	501	418	538
대덕구	24	23	34	30	48	49	81	60	114	92	137	125	164	160

자료: 행정자치부

#### 4. 유학생

대전지역의 유학생은 2009년부터 증가하여 2011년 정점에 이른 후 20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5년 5,35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9년 대비 108% 증가하였다. 그러나 행정구역별 유학생의 추이는 동구, 중구, 유성구 지역은 증가한 반면, 서구, 대덕구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행정구역별 유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전지역 전체 5,353명 중 유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이 2,483명(46.4%)으로 가장 많은 반면,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은 86명(4.6%)으로 가장 적었다. 유성구 다음으로 유학생이 많은 지역은 동구 1,643(30.7%), 서구 913명(17.1%), 대덕구 228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 계	4,957	5,272	5,664	5,413	4,980	4,852	5,353
동 구	1,353	1,578	1,648	1,579	1,457	1,465	1,643
중 구	46	39	147	144	119	97	86
서 구	1,429	1,427	1,368	1,244	1,073	966	913

행정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성구	1,843	1,960	2,193	2,219	2,119	2,095	2,483
대덕구	286	268	308	227	212	229	228

자료: 행정자치부

대전지역 전체 남녀별 유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대전지역 유학생 전체 남녀 비율은 남자 2,593명(52.3%), 여자 2,364명(47.7%)로 남자 유학생이 더 많았고, 이후 2014년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2015년은 남자 2,620명(48.9%), 여자 2,733명(51.1%)로 집계되어, 여자 유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행정구역별 유학생의 남녀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5년에 남자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지역구는 중구와 대덕구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지역구의 경우 남자 유학생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구는 2009년 남자 유학생의 비율이 45.7%이었으나 2015년 7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남녀별 유학생(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현황**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소계	2,593	2,364	2,746	2,526	2,935	2,729	2,754	2,659	2,572	2,408	2,483	2,369	2,620	2,733
동구	659	694	771	807	767	881	705	874	645	812	635	830	724	919
중구	21	25	17	22	90	57	87	57	76	43	66	31	61	25
서구	751	678	743	684	675	693	593	651	504	569	429	537	386	527
유성구	1,032	811	1,099	861	1,269	924	1,265	954	1,257	862	1,250	845	1,341	1,142
대덕구	130	156	116	152	134	174	104	123	90	122	103	126	108	120

자료: 행정자치부

## 5. 이주아동

대전지역의 이주아동은 2009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며, 2009년 2,441명에서 2015년 4,734명으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주아동은 서구 1,120명(23.7%)에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구 1,000명(21.1%), 대덕구 959명(20.3%), 중구 840명(17.7%), 유성구 815명(17.3%) 순이었다.

대전지역 이주아동의 행정구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대비 2015년 이주아동의 수가 감소한 지역은 동구, 중구, 서구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이주아동의 수가 증가한 지역은 유성구와 대덕구로 나타났다. 이주아동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서구 지역이고, 이주아동이 가장 적게 등록되어 있는 지역구는 2009년도부터 2014년도만 제외하고 2015년까지 유성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연도별 외국인 주민자녀 현황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계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734
동구	519	626	705	813	909	1,006	1,000
중구	483	508	617	708	792	787	840
서구	610	704	877	998	1,087	1,142	1,120
유성구	348	485	555	577	734	800	815
대덕구	481	558	685	751	843	931	959

자료: 행정자치부

대전지역의 이주아동의 남녀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전체 이주아동 2,441명 중 남자는 1,110명(45.5%), 여아 1,331명(54.5%)로,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5년 현재 전체 4,734명 중 남아 2,473명(52.2%), 여아 2,261명(47.8%)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이주아동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대전지역 행정구역 중 남



아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구역은 중구로 55.5%로 나타난 반면, 남아비율이 가장 낮은 행정구역은 유성구로 4.9%로 나타났다. 2009년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이 여아 비율이 높았으나,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대전지역 모든 행정구역에서 이주아동의 남녀비율은 남아가 절반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남녀별 외국인 주민자녀 현황**

(단위: 명)

행정 구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소계	1,110	1,331	1,518	1,363	1,806	1,633	1,990	1,857	2,264	2,101	2,440	2,226	2,473	2,261
동구	265	254	322	304	367	338	407	406	467	442	528	478	530	470
중구	268	215	271	237	329	288	379	329	408	384	412	375	448	392
서구	323	287	370	334	454	423	506	492	562	525	603	539	581	539
유성구	17	331	264	221	312	243	309	268	399	335	429	371	427	388
대덕구	237	244	291	267	344	341	389	362	428	415	468	463	487	472

자료: 행정자치부

<표 3-28>에 의하면, 대전지역의 이주아동 및 청소년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모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학생수는 2014년까지 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현재 7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대전시 연도별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학생 수

(단위: 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소계	국내출생	중도입국			
2012	602	546	56	159	134	25	78	60	18	53	7	8
2013	762	715	47	191	165	26	110	93	17	59	15	6
2014	978	919	59	188	162	26	131	118	13	61	17	3
2015	1,226	1,158	68	187	163	24	129	117	12	91	27	7

- 주 1.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자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함. 단,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로서, 부모의 이혼 후 재혼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생긴 경우는 제외함. 중도입국자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로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모(부)와 재혼하여 부모와 함께 또는 중도에 입국한 자녀를 말하며, 외국인 부모의 한국 국적 취득여부는 관계가 없음
2.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를 말함(외국인 근로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등)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 제3절 대전 다문화 관련 사업 현황

#### 1. 다문화 관련 조직 및 업무

대전지역의 다문화 업무는 대전시본청과 5개 자치구,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 본청에서는 다문화가족담당 업무 총괄 조정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시책 발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시책 발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업무, 다문화가족 전담요원(상담/영어), 그리고 다문화가족 전담민원 상담요원(중국어) 운영 및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전지역 5개 자치구 모두 다문화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조직 및 상황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다문화업무는 주로 복지와 여성가족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여성가족과에서, 동구는 복지정책과, 중구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각 자치구의 다문화 담당부서와 업무는 아래와 같다.

**<표 3-29> 대전시 각 자치구 다문화 업무 현황**

구 분	담당부서	담당업무
동 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다문화 지원
중 구	복지경제국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 가족지원 기관 네트워크 형성
서 구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덕구	경제복지국 여성가족과	다문화 건강가정, 다문화 시설 운영 지원
유성구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자료: 대전광역시 각 구 홈페이지

시 본청과 5개 자치구는 대전지역 내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표 3-30> 참고).

**<표 3-30> 각 센터 주요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대전시 거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모임</li> <li>●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li> <li>● 다문화가족인식개선</li> <li>● 지역사회네트워크</li> <li>● 보건의료사업</li> <li>●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10월)</li> <li>- 무료진료페스티벌(연 2회, 4월, 9월실시)</li> </ul> </li> <li>●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li> <li>●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li> <li>● 거점센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li> <li>- 직원 및 방문교육지도사 교육 실시</li> <li>- 권역 내 센터,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li> </ul> </li> </ul>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li> <li>- 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역할 등</li> <li>• 사례관리사업</li> <li>• 결혼이민자멘토링사업</li> </ul>
동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번역서비스(베트남어)</li> <li>•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li> <li>• 필하모닉 오카리나</li> <li>• 나눔봉사단</li> <li>• 취미, 특기 교실</li> </ul>
중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모임 / 나눔봉사단</li> <li>•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홍보</li> <li>• 육아정보 나눔터</li> <li>•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li> </ul>
서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모임 / 나눔봉사단</li> <li>• 홍보 및 정보제공</li> <li>• 가족친화 건강한 가정생활 만들기(특화사업)</li> </ul>
대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사업: 모이세 가족합창단</li> <li>• 홍보 및 자원연계: 자원봉사자, 후원자 연계, 지역네트워크, 인식개선사업</li> <li>• 특성화 사업: 통번역서비스</li> </ul>

자료: 대전광역시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대전시 전역과 유성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 거점센터가 있고, 동구와 중구, 대덕구와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각각 있다. 5개 다문화지원센터 가운데 2016년 유성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시 거점센터와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족 지원센터와 통합되었다. 각 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방문 교육, 통합교육(가족 및 사회통합, 인권 및 취업 관련 교육 등), 상담,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동일 교육 외에 아래와 같은 각기 사업을 펴고 있다.

## 2. 이주민 관련 조례 및 규칙

### 1) 대전시청

- (1)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2)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3)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4)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2) 동구

- (1) 대전광역시 동구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2)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3) 중구

- (1) 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2)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3)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4) 서구

- (1) 대전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2) 대전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3) 대전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5) 대덕구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6) 유성구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3. 2016년 다문화가족정책 대전광역시 세부 시행계획

이주민 관련 정책은 크게 6가지 영역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셋째,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넷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섯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이다. 이주민 관련 정책 영역별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52)</sup>.

〈표 3-31〉 이주민 정책과 사업 내용

정책 영역	세부 사업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li><li>• 한국어교육 운영</li><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li><li>•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li><li>•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li><li>• 다문화가족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li><li>• 대전, ‘달콤한 우리집’ 프로그램 운영</li><li>•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개최</li><li>• 다문화 자료실 및 가족관 운영</li></ul>

52) 여성가족부, 2016,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6년도 시행계획」 내용에서 발췌

정책 영역	세부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li> <li>•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li> <li>• 찾아가는 맘코칭 프로그램 운영</li> <li>• 다문화가족 독서 프로그램 운영</li> <li>•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li> <li>• 우리아이 성장 프로젝트</li> <li>•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li> <li>• 한국어 이해 능력 향상 독서프로그램 운영</li> <li>•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 운영</li> <li>• 찾아가는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li> <li>• 학습 멘토링 서비스 실시</li> </ul>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 강화</li> <li>•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추진</li> <li>•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li> <li>• 다문화가족 성·분창설 및 개명(작명) 지원</li> <li>•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li> <li>• 결혼이주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li> <li>•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li> <li>• 다문화가족 개인·가족상담 지원</li> <li>• 다문화가족 전담 민원상담창구 운영</li> <li>• 다문화가정 앨범 제작 모국 발송</li> <li>•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정한 선생님’</li> <li>•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li> <li>• 다문화가족 신문 배부</li> <li>• 결혼이주여성 생명존중문화 확산 교육</li> <li>• 다문화가족 어머니 학교</li> <li>•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 교실</li> <li>• 외국인 종합생활안내 홈페이지 운영</li> <li>• 다문화가족 무료진료 페스티벌 개최</li> <li>• 다문화 나팔(나눔을 팔고 사는) 시장 운영</li> <li>• 맞벌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li> <li>• 기아대책 이주여성쉼터 운영</li> </ul>

정책 영역	세부 사업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li> <li>•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li> <li>• 다문화가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지원</li> <li>• 결혼이주여성 자활 공동사업장 운영</li> <li>•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알선</li> <li>•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훈련 실시</li> <li>•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li> <li>•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 실시</li> <li>•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li> <li>•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구성·운영</li> <li>•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확대</li> <li>•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li> </ul>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확대</li> <li>• 일선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사회의 이해’ 교육 실시</li> <li>• 어린이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li> </ul>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운영</li> <li>•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li> <li>• 다문화 정책 홍보 및 자원 연계</li> </ul>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지방자치단체 2016년도 시행계획 내용 재구성

## 4. 대전지역 이주민 관련 민간 지원 기관

### 1)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은 200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무료진료, 컴퓨터, 직업훈련, 다문화, 아동교육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로서 부설기관으로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소,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도서관, 다문화아동센터, 사회적기업 I'mAsia를 통해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의 사업은 크게 교육사업, 무료진료, 다문화도서관, 사회적기업으로 나뉜다. 교육사업은 법률상담, 이주외국인 컴퓨터, 한국문화체험행사,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다문화가정 아동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이다. 무료진료는 양방, 한방, 치과, 약국 부분을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



고 있다. 다문화도서관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8개국 4천여 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 다문화아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I' m Asia라는 아시아&다문화카페를 이주여성들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립을 목적으로 창업하였다. 기관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32> 대전이주의국인종합복지관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상담: 노동상담, 임금체불, 산업재해, 출입국문제, 민형사문제, 국적취득, 이주여성문제 등</li> <li>• 이주외국인 쉼터(20평 규모): 실직, 산업재해, 폭행, 질병 등으로 오갈데 없고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이 잠시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공간</li> <li>• 한국문화체험행사</li> <li>• 한국어교육(주체: 자원봉사 꿈땅&amp;두드림):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li> <li>• 컴퓨터 교육(주체: 자원봉사 꿈땅&amp;KT-IT서포터즈):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컴퓨터 교육</li> <li>• 다문화가정 아동교육(주체: 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아동센터): 미취학 아동 한글 및 감각통합 활동교육,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위한 가배교육</li> <li>•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교육(주체: 이주여성인권센터):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이/미용사 자격증 취득반</li> </ul>
무료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과목 및 진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방: 대전 전공의 협의회, 개원의</li> <li>- 한방: 대전한의사협회, 누가한의사회, 청년한의사회</li> <li>- 치과: 건강치과의사회, 보건대학 치위생과</li> <li>- 약국: 대전 여약사협회</li> </ul> </li> </ul>
다문화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어린이도서관 ; 8개국 4천여권의 도서를 구비, 매주 일요일 다문화아동교육 진행</li> <li>• 찾아가는 다문화동화교육: 다문화엄마들로 구성된 다문화동화강사단을 조직하여 유아, 초등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다문화동화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재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엄마들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6개국 15명임.</li> </ul>
사회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요리&amp;다문화카페 I' m Asia 창업</li> <li>• 케이터링단(출장서비스, 맛 체험단) 운영</li> </ul>

자료: 대전이주의국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 2) MOYSE

대전천주교 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 모이세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이 대전지역 체류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3년도에 개소를 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그리고 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노동과 가족상담 및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 3)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대전 및 대전 근교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함께 하고자 설립되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노동법률상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의료지원,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33>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노동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법률 검토 후 해결을 도와줌</li> </ul>
교육문화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 실시</li> <li>• 한국어반은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li> <li>•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를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의사 소통이 되며, 특히 영어는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영어반도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li> </ul>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무료진료소'에서 내과, 치과, 그리고 한방 진료 실시</li> <li>• 외과, 산부인과 등은 협력 관계를 맺은 병원에서 치료</li> </ul>
복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침술봉사 실시</li> </ul>

자료: 대전이주노동자연대 홈페이지

## 5. 대전지역 여성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 1)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4년 대전에 개소한 이래 상담, 의료, 교육, 문화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이다. 대전지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글교육과 정보화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국적취득이나 이혼 등의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표 3-34〉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이주여성 한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지역의 이주여성들의 원활한 언어소통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한글교실을 운영</li> <li>한글교실은 자원봉사자들(한국어 교육교사와 한글지도도우미)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뉘져 운영되고 있음.</li> </ul>
이주여성 컴퓨터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여성들의 한국적응을 위하여 컴퓨터교실을 운영</li> <li>컴퓨터교실을 통해 인터넷검색, 이메일관리, 인터넷쇼핑 등 실제적인 활용법을 교육</li> </ul>
이주여성 미용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여성들의 자존감 향상과 경제적 능력 배양을 위한 자기계발 과정으로 미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li> </ul>

자료: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 2) 대전이주여성쉼터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4년 대전에 개소한 이래 상담, 의료, 교육, 문화사업을 통해 대전지역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민간단체이다. 대전이주여성쉼터의 주요사업은 가족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숙식제공·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법적 지원, 취업 지원 및 기타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35> 대전이주여성쉼터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식의 제공</li> <li>•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li> </ul>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li> </ul>
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li> <li>•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li> </ul>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li> <li>•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li> <li>•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li> </ul>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 3) 대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서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자국어 상담과 통역 번역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경찰, 병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연계하며 베트남, 중국, 영어,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러시아어 등 자국어로 상담을 하고 있다. 대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초기상담서비스, 법률상담, 긴급보호, 무료 통역 및 번역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36>에 정리되어 있다.

**<표 3-36> 대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폭력피해 당한 이주여성 을 위한 자국어 초기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를 잘 하지 못 하는 이주여성들도 이주여성전문상담원을 통해 자국어로 상담</li> <li>•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등 7개 국어지원</li> <li>• 상담번호: 042)483-1633, 042) 485-1633, 042) 488-2979, 1577-1366(야간)</li> <li>• 상담지원</li> </ul>

구 분	내 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5일 전화상담: 오전 8시 ~ 오후 10시</li> <li>- 야간 재택전화 상담: 오후 10시 ~ 익일 오전 8시</li> <li>- 면접상담: 수시 / 가족상담 및 통역지원</li> <li>- 인터넷상담: <a href="http://www.wm1366.or.kr">http://www.wm1366.or.kr</a></li> </ul>
법률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대한변호사협회의 당직 변호사가 다누리콜센터에 방문하여 진행</li> <li>• 상담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00~4:00(주1회 운영)</li> <li>• 상담방법: 면접 또는 전화</li> <li>• 신청방법: 상담 전에 전화(1577-1366) 예약</li> </ul>
긴급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대 등 피해를 입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상담소,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과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li> </ul>
무료 통역 및 번역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여성과 관련된 상담소나 단체, 행정, 사법기관, 경찰등 유관관계기관에도 무료로 통역과 번역지원</li> </ul>

자료: 다누리 콜센터 홈페이지



## 제 4 장

#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의견

---

제1절 다문화 관련 공무원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의견

제3절 이주활동가 의견

---





## 제 4 장 대전지역 이주민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의견

대전지역의 이주민 현황에 맞는 이주민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주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면접자를 선정했다. 다문화 관련 공무원 6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5명, 이주활동가 5명 총 16명으로부터 대전지역의 다문화, 이주민 관련 정책 현황과 평가, 향후 필요한 정책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접자들의 이름은 인터뷰한 순서에 따라 알파벳으로 명명했다. 동일한 날에 이뤄진 인터뷰는 시간 순서에 따라 알파벳 순서를 정했다. 인터뷰는 면접자들의 근무처 혹은 일터에서,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반까지 이뤄졌다.

### 제1절 다문화 관련 공무원

**<표 4-1> 대전지역 다문화 관련 공무원 인터뷰 현황**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일정
A	2016년 9월 20일
B	2016년 9월 21일
C	2016년 9월 21일
D	2016년 9월 22일
E	2016년 9월 22일
F	2016년 9월 23일

## 1.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정책

### □ 다문화는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면접자들은 ‘다문화’와 결혼이주,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과 동일어로 보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인 만큼 무의식적으로 다문화정책의 대상인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을 다문화로 불렀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면접자들은 다문화정책의 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이 출산한 자녀에 한정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분들..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하다보면, 우리나라 문화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합쳐진 그런 형태의 가구로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용어가 ‘다문화’라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은 무조건 들어갈 것이고, 플러스 ‘필리핀’이 될 수 있고, ‘베트남’이 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문화가 합쳐진 가구형태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말로 정의한 거 같아요.(C)

이처럼 “두 개 이상의 문화가 합쳐진 가구형태”인 국제결혼을 다문화로 인식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인권침해로 인해 등장한 학계와 시민 영역의 다문화담론이 정부에 의해 전유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국민만들기’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목적한다(심승우, 2013).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적응이 기본이고 주대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한다. 결혼이주남성의 경우 다문화정책에서 주변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도 분명히 있고, 넓게 보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인거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 자체가 남성을 위한 게 많지도 않고. 여성위주로 가고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말하는 다문화는 단순히 결혼이주여성만을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B)

한편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초국적 기업들의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다문화는 세련된 것 혹은 개방적이고 선진적인 것이라는 이미지가 퍼졌다. ‘발전’된 것으로 상징화된 다문화는 저개발국가에서 결혼을 통해 이주해 온 여성들이 가져온 문화가 한국문화와 만나서 성장한 것 혹은 단일문화라는 다소 좁은 의미에서 다른 문화가 더해져서 발전된 형태로 긍정적 의미를 포함하기 한다.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한민족-단일민족을 강조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결혼이주여성들도 증가하고 하면서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살면서 외부에서 온 문화들이 원래 우리 고유문화와 만나면서 새롭고 또 발전적인 문화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화로 확대 된 게 다문화겠죠?(E)

#### □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간극

그러나 상당수의 면접자들은 개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와 정부정책의 ‘다문화’의 범주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단순히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맺어진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을 의미 하는 건지. 물론 다 총체적인 범위이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든 거 같아요. 다문화의 정의가 일단 국제결혼을 하면 다문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다문화가 어떤 때는 넓게 포함되는 거 같지만, 어떤 때는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통계 같은 걸 봐도 다문화가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인지 유학인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거 같고. 그래서 저도 도리어 궁금한 거예요.(B)

## 2. 다문화 정책 대상의 확대

면접자들 가운데는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

과 이해를 갖고 있는 이가 있는 반면에,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2개월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있었다. 면접자들 사이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컸지만,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써 ‘다문화’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문화’의 대상과 개념이 달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와 현재 다문화정책 대상 사이의 간극이 있다면, 이 둘 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면접자들은 다문화정책의 대상을 확대·통합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정책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등 다른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냥 전체 다문화의 일종인데, 그 세부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복지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등 나뉘듯이 대상을 맞춰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다문화도 어쨌든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다문화라고 하는 것일 테니, 그게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유형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B)

면접자들이 다문화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요 업무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과정이 아니라 부모집이나 자녀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대면하는 새로운 이주민 때문이었다.

#### □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과의 대면

대전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아동에 대한 면접자들의 의견도 나왔다. 면접자들은 다문화정책의 대상자를 결혼이주민과 자녀, 그리고 그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대면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당황하고 있었다.

거기에 보면 빌라에 외국인들끼리 사는 집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있는 집들도 제법 많을 거거든요. 제법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한분은 다문화가정이고 한분은 이주노동자 이렇게 두 분이 다 필리핀 분이셔서 왔는데, 보육료를 지원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노동자는 양쪽이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을 못 받고, 다문화가정은 남편이 한국 분이셔서, 보육료를 지원받으셨죠. 저도 제가 못 봤으면 그런 가정이 있는 줄 몰랐을 텐데, 제가 직접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민으로 인정받는다고나 하는 게 아니니까...(A)

한국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이주민은 국가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잠시 머무르다 떠날 노동력으로 관리되는 이주민은 복지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면접자는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정책의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문화는 여기서 담당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외국인은 다른 과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다문화 정책 따로 세우고, 외국인 정책 따로 세우고, 그런데 외국인 정책이랑 이분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정책이 크게는 외국인 정책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합쳐지는 게, 이게 너무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같긴 해요.(A)

정책의 효율성이나 인권적 차원에서 이주민 전체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을 통합해야한다고 면접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문화’를 결혼이주로 인식하면서 다문화정책대상은 이주민전체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간극은 이주민을 지역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 다문화가족 VS 이주노동자

기존 다문화정책의 대상인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에서 이주노동자 및 그 외의 이주민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회의 필수적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단기거주자로 보는 경향이 우리 사회의 주된 인식이기 때문에 사회정책보다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B)”으로 분석기도 한다. ‘당사자성’의 부족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부족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주노동자들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또 잘 모르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과연 여기에 상주를 하러 오는지, 아니면 단기간에 머물다가 갈 목적인지. 그런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B)

면접자들은 ‘이주목적’이 정책대상의 포함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이주하는 개인들이 생애과정에서 삶의 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삶을 기획하는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했지만,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직업을 갖는다. 미래를 위해 한국남편들은 이주한 배우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면,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혹은 이주과정에서 가족을 이루는 등의 행위는 이해될 수 있다.

## □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합의

다문화 정책대상의 다양화와 확대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정책대상의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문화정책의 중점대상인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이주민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의 지속적 거주 의지' 를 확인하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실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민을 오신 건데,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 산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한국이 좋아서 계속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때가서 다문화로 분류하면 되는 거고. 아직 한국에서 계속 살지 아닐지 의지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문화가정으로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C)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를 담당하는 면접자들은 이주목적에 따라 이주민을 구별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자녀출산 등 가족재생산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완수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의 주요 정책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이주를 취업기회와 연결시키고 있다(유은주, 2010; 박혜경·이재경, 2010 53). 여성의 경우 생애과정에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이 중첩되고 반복되는 과정을 상당수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일차적 의무로 규정하고, 노동이주여성에게 임금노동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분들이 정말 여기서 살 마음이 있고, 국가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더 포용적으로 가야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주여성들 조차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주여성 가운데) 얼마 살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보면 위장결혼을 이유로 본국으로 퇴출당했다거나, 처음부터 결혼의 의사가 없었고, 취업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구정책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범위를 확대해버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

53) 박혜경·이재경(2010), 「탈빈곤 전략으로서 이주결혼의 역설: 한국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2(4), 33-62쪽.; 유은주(2010), 내가 시집을 온 건가, 일을 하러 온 건가: 여성결혼이주자의 노동자성 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10(1), 199-245

같아요. 점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기나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

#### □ 지역의 맥락과 특성에 맞는 정책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 노동시장의 요구, 사회적 요청 등 다양한 맥락 안에서 정책대상은 결정되어야 한다. 다문화정책의 대상 확대에 앞서 지역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맞는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요구다. 면접자들은 중앙정부의 단일한 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문화정책과 정책대상을 설정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문화를 이루는 양상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문화의 각각의 유형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결혼이주여성 위주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의 특성이 있고, 공단이 많거나, 경기도 이런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사회문제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하겠죠. 국가 정책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정책이 있어야겠죠. 다만, 일괄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B)

### 3. 다문화정책의 방향

#### □ 결혼이주민에서 이주배경 아동으로

면접자들은 대전지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제 이들과 자녀에 대한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모든 대상을 아울러서 정책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할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몇 가구 걸러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다



문화 가정들의 2세대.. 그들이 성장했을 때, 소외감이나 차별 이런 부분 없이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2세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정서적인 면에서 좀 더 다독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술이나 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주입식 교육체계보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융화되고 화합될 수 있는 지름길인거 같아서.. 그래서 2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E)

#### □ 정책 재원의 확보

특히 면접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문화’ 라는 용어와 인식만큼 ‘다문화’ 에 대한 예산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의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행정관청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 복지 쪽 예산이 많은 편이잖아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복지예산이 많은 거에 비해서 다문화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거죠. 지원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금액 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거죠.(F)

무엇보다도 면접자들은 자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자체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체재원이 필요하죠.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국적취득에 관한 교육, 가족 간의 대화라든가 감정의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대처방안, 학업에 대한 욕구를 충족 방안, 위기 가정에 대한 적절한 대처, 취업욕구 등 맞춤형 사업을 연구하고 수행할 수 없어요.(D, 대전시)

## □ 생활세계 내 구체적 정책

예산의 부족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요청과 욕구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주민 정책은 일방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요구하는 한국어 습득이나 문화적응처럼 언어교육과 사회 통합에 맞춰져 있다.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 한국인들이 고민하는 주거 문제와 문화향유, 교육 등과 관련된 이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채워지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언어교육이라던가, 사회통합교육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공급을 할 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넣는다거나, 사회이용시설에 보면 할인대상자에 다문화가 꼭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거 같고.(C)

특히 이주민을 일찍 수용한 서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민족적 갈등을 알고 있는 면접자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및 자녀의 증가와 사회갈등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되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다문화정책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을 몇 가구 걸러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다문화 가정들의 2세대들. 그들이 성장했을 때, 소외감이나 차별 이런 부분 없이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잘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2세대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정서적인 면에서 좀 더 다독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술이나 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어린이 합창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서, 주입식 교육체계보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융화되고 화합될 수 있는 지름길인거 같아서(E)

## 4. 거주권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결혼이주민 외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서 면접자들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었다.

면접자 가운데는 국민이나 비국민이냐를 떠나서, 일단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포용적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국민이 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 않아서 국민이 될 수 없는 이주민도 있고,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이 되고 싶지 않은 이주민에게 일정부분의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다. 국민 혹은 비국민이라는 이분법적 분류가 아니라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이주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리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주권과 관련해서는 국적법을 완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면서 의무도 함께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세금을 일부를 부담하고 거주권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C)

그러나 면접자들은 유연한 시민권으로 볼 수 있는 거주권에 완전한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그치면 안 되고, 결혼을 한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한다거나하는 법적인 형태(C)” 를 준비 중인 이들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면접자들은 결혼이주민 외에 다양한 이주민이 실제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지역민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 5. 대전의 이주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

다문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면접자들은 지역에 관련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담아내는 현실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기초적인 현황 데이터와 함께 다양한 연구 자료는 필수적이다. 예산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의 현황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발굴하기도 지역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 현황파악의 어려움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지역에 이러이러한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정책을 진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관내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현황은 그 담당자한테 다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현황파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더니, 현황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까지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지. 처음에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현황을 알아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F)

#### □ 실태조사의 필요성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개발을 위해 면접자는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체 재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D)”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의견

대전에는 현재 5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대전시 거점센터인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유성구에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합하는 추세에서 유성구에 있는 대전시의 거점센터와 서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합을 했다. 대덕구와 중구, 동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있다.

〈표 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터뷰 현황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일정
G	2016년 9월 26일
H	2016년 9월 28일
I	2016년 9월 29일
J	2016년 9월 30일
K	2016년 10월 6일

## 1. 다문화가족의 새로운 현상

### □ 현황파악의 여러 문제

대전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터뷰참여자들은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첫째는 통계자료가 늦게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통계의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센터를 찾아오거나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센터를 모르거나 알아도 오지 못하는 결혼이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다.

시에서 현황이 나오는데, 항상 1년 정도 늦더라고요, 그래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사각지대나, 혹은 드러나지 않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J)

대전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 혹은 부정확은 여러 이유가 있다. 인터뷰참여자들은 결혼이주민의 거쳐, 즉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발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서 조사가 불가능했던 이유로, 대전지역의 거주지의 불확실성이 높게 조사됐다. 국적이 없는 이주민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소 파악이나 가족구조나 형태의 변화, 교육참여 유도도 힘들다.

등록 자체를 안 하신 거예요. 들어 온지 10년이 됐는지, 1년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600명 가운데, 1년에 이곳을 이용하는 수는 300명이에요. 또 절반이잖아요.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연락이 안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소,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데, 주소 금방 변하면 모르잖아요. 전화도 바꾸면 몰라요. 연락을 했는데, 안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낯선 번호는 받지를 않아서,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적취득하기 전에는 주민 센터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주민 센터에서 “우리 무슨 동에, 결혼이민자 누구누구 있어요? 몇 명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주민 센터에서. 그게 외국인 등록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 주소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주소지가 남편 주소지래요. 저도 그전에 현황파악을 할 때, 다문화 가족이 몇 명이 되는지, 그걸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건강가정진흥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이 숫자가 어디를 보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 1200명이라는 숫자는, 남편이 1200명이니까 아내도 1200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H)

#### □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출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전지역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욕구 파악의 늦어짐으로 연결된다. 결혼이주 역사가 길어지면서, 초기에 결혼이주 민은 한국 사회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많다. 이들 가운데는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 별거를 경험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즉 ‘다문화 가족’이라는 유형화된 형식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한 파악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혼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이혼 할 거라고 해서 센터에 와서 신고하거나 하시지 않지만, 간혹 상담 하신 분들 보면, 이미 이혼을

해서 이혼 이후에 양육 문제, 보육 문제로 오시는 분들도 늘어났고요. 알고 보면 사별 하신 분들도 많고, 굳이 이혼-사별이 아니더라도 남성분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퇴직이라든지, 경제능력상실로 인해서 여성이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만 있는, 주부가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많이 늘기는 했어요.(J)

현재까지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을 결혼이주남성과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합이라는 일반화된 다문화가족 구성 원리는 일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와의 별거와 이혼 등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만 남는 한부모 가족이나, 한국측 가족의 일방적 요구로 자녀를 놓고 나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도 증가세다.

이외에 다문화가정은 초혼 내국인 남성과 초혼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상적 국제결혼 외에, 재혼 내국인 남성과 초혼 외국인 여성, 초혼 내국인 남성과 재혼 외국인 여성, 재혼 내국인 남성과 재혼 외국인 여성 등 결혼과 자녀들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가족의 결합으로 분화되면서 초국적 네트워크와 연결망을 가진 글로벌 가족으로 수렴되고 있다(반대로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도 동일하게 다양한 결합의 가족형태도 있다). 이외에 결혼이주로 한국에 정착해 국적을 취득한 남녀가 외국인과 결합하는 새로운 다문화가족도 출현하고 있다.

대전시에 들어오는 이민자(결혼이주여성)들이 20명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급속한 증가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결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와서 한국남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 그러면 이 분들이 국적을 취득해야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국적이 없어서 재혼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재혼을 할 때는, 한국남성이 아니라 본국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다문화가족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문화가족이니까, 그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들로 인한 남성분들이 오면 그러면 우리노동시장도 분명히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G)

또 대두되는 문제로는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초혼이 아닌 재혼인 경우도 있어요. 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양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고 국적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국적취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아이잖아요. 외모나 이런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이는 한국어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해야 해요. 학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이미 교육청에서 나름 노력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게 최근 몇 년 인거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의 노력을 할 거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교육청에서 거점 학교를 정한다거나 해서 나름 노력을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봐요. (G)

#### □ 다문화가족 내부의 계층화

다문화 내부의 계층분화도 심화되고 있다. 소위 ‘도시형 다문화<sup>54)</sup>’ 라고 불리는

---

54) 면접에서 만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대전지역의 다문화 특성을 ‘도시형’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규정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첫째 업종이 무엇이든간에 농업이나 어업처럼 자영업이 아닌 임금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셋째는 교통의 편의성이었다.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으세요. 예를 들면 시골 같은 경우, 경제적인 활동이라는 게, 가정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시니까, 그 일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내 개인적인 통번역 일을 하거나, 무역 일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 하다못해 공장이나, 또 아니면 여긴 연구단지도 많으니까,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농업을 계속 해야 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보다 경제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이 더 많이 있으시죠. 시내권에 사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경제적인 취약가정? 이런 부분을 사실, 일반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취업위기가 있고 하듯이, 그런 건 그 분들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취업이 어려운 건 아닌 것처럼. 다만 문화적으로 취약할 수 있잖아요. 언어적이든, 생활문화든. 그런 쪽에서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좀 더 도시에 계신 분들의 경우, 교통편,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나오시니까. 사실은 시골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잖아요. 한 마을에 한 가정 두 가정만 있고, 일 년에 몇 번 안 오고. 그렇다 해도 센터가 마을마다 있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시려고 하면 교통편 때문에 잘 못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안, 고흥 이런 쪽은 섬들이 많아서, 방문지도 선생님들도 배 타고 들어가셔야 한 대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형에 가까운 거죠.(K)”



대전광역시의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스펙트럼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은 결혼이주민 간의 학력이나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진행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대전에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해요. 그나마 000구 쪽에 사는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학력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높은 거 같긴 해요.(I)

특히 대전 특정 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귀족다문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다문화 내부의 계급격차가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 도시의 빈곤 남성이 제3국의 여성들과 중매를 통해 결합하는 소위 보편적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제3국에서 유학을 가서 결합한 고학력 다문화가정, 외국에서 취업 중에 만난 중산층 다문화가정 등 ‘결혼이주민’의 입국 및 정착 과정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도 안 다닌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 같이 놓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000구 같은 경우, 연구원들 부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말로, 귀족다문화라고, 그 쪽 수준은. 그런데, 여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일과 병행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일거리를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H)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형성이 된 가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000구 지역에서 보면, 유학 가서 만나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구요, 남편분이 본국 나라에 가서 만나서, 연애 결혼해서 오시는 분도. 또 제 3국으로 가서 만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이 000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보니까, 학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K)

대전광역시 인구의 3%를 넘지 않는 이주민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내부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이주민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면서, 내국인들과의 조화를 유도해내는 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다문화가족과 이주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출현하면서 내국인들과 이주민들이 만나는 마을공동체와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미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가족이자 노동자, 소비자로서, 지역주민들은 이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김현미·류유선, 2013).

## □ 일상생활 속의 다문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 출현은 이제 사회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체적 현실이 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가 업무를 넘어서 자신의 가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과 가족의 생활세계로 다문화가 들어올 것이라는 감각이 생긴 순간, 다문화는 개념이나 사업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다문화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현상인거 같아요. 벌써 저희 딸 반에도 두 명인가가 다문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내 사위나 며느리도 다문화 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걸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정말 내 일인 거 같아요. 내 일이고, 내 생활이고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J)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는 거죠. 요즘에는 반에도 다문화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옆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드리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냥 같은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J)

## □ 정체성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가 의무가 될 정도로 확산되는 사회에서 ‘정체성’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처럼 민족적 단일성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차이’와 ‘다름’은 이질적인 것이나 불결한 것으로 이미지화되기 쉽고, 이질적인 것은 동일성으로 흡수되는 동화정책이 펼쳐지게 된다. 그러나 호미 바바(Homik Bhabha, 2002)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복이라는 것이 동일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자체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혼종성(hybridity)이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가 단일하다고 믿는 민족성이나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 주체들의 반복 과정 속에 나타난 차이들이 경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정으로서의 총체성이며, 이것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사회에 출현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한국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강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적이나 민족, 인종, 계급, 언어와 종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지역민을 수용하는 인식의 확장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는 정체성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중국이라던가, 조선족, 일본, 이런 식으로 걸어서 보기에 비슷한 친구들은 그나마 나운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본인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라든지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J)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어려움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었다.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육체적 어려움과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사업 수행 시 경험하는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특히 면접자들은 지역의 결혼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현황 파악의 어려움이 결국은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이주민들을 만나고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들로서는 지역의 이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을 적시에 담아

내지 못하는 정책과 사업에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 상황이 좋지 않은 미등록이주민과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한국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문제나 자녀양육문제 등에 지원의 방법이 없다는 점을 힘들어 했다.

## □ (미등록)이주노동자 지원의 어려움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업무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센터의 사업으로 끌어들이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센터의 사업이 주로 평일 낮 시간에 벌어지는데,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가 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센터의 정책대상이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이 혈연이나 국적 등과 연계된 특정 범주에 포함되는 이주민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난민 등 모든 이주민을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김용희, 2011).

(대상자)확대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마다는 많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을 들여는 보내요. 여기서 수업을 해요. 그런데, 그걸 막상 실적화 할 때, 분리가 되는 거죠. 실적으로 넣기는 넣는데, 그 부분은 실적으로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적은 결혼이민자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1200명 600명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 안에, 유학생이나, 단순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여기 오면, 그 사람들은 300명 안에 안 들어가요. 300명 이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와봐야, 우리 지원금 받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허수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H)

여건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낮 시간에 올 수 없잖아요. 이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니까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유학생들도 학교 다녀야 해요. 이분들은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럴 때 참여를 하죠. 평상시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결혼이주여성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G)

한국인 만들기의 주요 정책대상인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폭력과 같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부모 간병과 같은 끊임없는 재생산노동, 외부 활동의 금지, 일상적 무시 등 부인이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인습적으로 당연시되는 일들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오는 비난 등, 증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거나 집을 나와야했던 결혼이주여성은 ‘불법’, 미등록이주민으로 체류자격이 전환된다(류유선, 2015; 이다솜, 2016). 이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도 단속이나 추방의 위협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은 어려워진다.

가장 큰 그리고 이분들은 신분 상 합법적인 체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법체류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어려운 거죠. 저희는 교육지원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인권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잖아요.(G)

## □ 사별로 인한 이주여성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이주제도에서 결혼은 외국인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는 결혼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것으로 내국인 배우자의 승인에 달려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F-6-3이라는 비자가 있지만 시댁식구들의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정보를 얻기도 어렵다(이다솜, 2016).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저희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 제도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할 때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해서 왔는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사망을 해요. 그런데 국적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안타깝죠. 애랑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냥 저희는 정보만 알려주고 예를 들어 한시적 수급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보만 알려주고 협조요청을 하는 정도인거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을 해야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거든요. 국적 취득을 못하더라도 아이가 18살까지는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국적취득을 못하면 아이가 18살이 되면 엄마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 분은 국적취득을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공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장 엄마가 일을 해야 아이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건 정말 한시적인 거고, 장기적인 대책이 서질 않는 거죠(G)

#### □ 지역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들

사실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하고,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탁상공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좌절되는...우리가 열심히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대전시나 여가부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일이 재미있죠. 현재의 문제가 금방금방 반영되고 해야 되는데, 몇 년 전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고.(I)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한 어려움은 곧바로 종사자들의 만족도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직무자체, 상사, 보수, 승진과 동료, 시설 등과 연계된다(강석철, 2011; 박종필, 2014). 그러나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말하고 있는 직무만족도와 연결된 ‘좌절’의 감정은 다른 맥락을 갖는다. 그 감정은 현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탁상공론’ 정책에 대한 것이다.

지역의 다문화 현안을 적시에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다문화지원센터의 한계에 대해 센터 종사자들은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경선, 2011),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심이 예산부족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 □ 인력의 부족

어려운 점이라는 게 사실은 지자체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도 거의 없고, 거의 인건비가 95%정도 해당이 되고요. 주 목적은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하는데, 사업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또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충남같은 경우에는 거점인력이 2~3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특성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북도 마찬가지구요.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거점 인원만 3~4명 되는 거 같아요.(I)

대전시 전체가 5700명이 있고, 저희 구는 지역주민 수 비례해서 가장 밀도가 높다고 해요.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해야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원 안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안 주잖아요. 이 분들이 안 오면, 우리가 쫓아가서 찾아내지도 못하거니와 그 사람이 여기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일단 와야 하는데, 지금 등록된 사람이 600명이에요.(H)

## □ 재정의 부족

예를 들면 아직도 여가부에서 기본사업들이 변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갭이 굉장히 큰 거죠. 이럴 때, 사실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진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면 일부에서는 너희가 개발해서 하면 되지 않냐. 대전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10%도 안 돼요. 단위로 치면 1년으로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3~400만원 밖에 안 돼요. 3~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거의 사업의 모든. 거의 한 80%은 연계사업이에요. 한국어를 빼고는 그래서 지역사업과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기본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그냥 하는 애기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해서 사업의 80%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한 능력들은 다 되는 거 같아요.(I)

###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중 영역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지역의 각 센터의 사업의 대상과 방향에 대해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정부분 시스템의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스템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일정부분 확보되었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생활 적응 등에 교육내용과 질, 그리고 강사들의 자격 등에 대한 신뢰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 적응하는 부분은 완전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렵게 찾아보지 않아도, 제도적-정책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워낙 이 부분은 잘해서, 본인만 갈 의지가 있다면, 센터가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방문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보만 있고 하면 얼마든지 시스템으로 할 수 있거든요.(I)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언어교육이나 문화 등 초기정착에 집중하는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제도와 정책, 사업에 비판도 있다. 이주 초기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 적응 시스템은 안정화되었지만, 이 시기를 벗어나 자녀 양육과 교육, 부모 돌봄, 그리고 일자리나 자기역량 개발과 같은 개인의 재생산과 가족유지, 그리고 공동체 참여와 같은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 지역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책과 제도 부족에 대한 비판이다.

다문화 가족 분들에게 언제까지 초기정착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분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제 자녀분들이 군대에 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언제까지 한국어 알려주고, 초기정착 관련된 부분만 하는 건 아니고..(K)

따라서 결혼이주민과 대면접촉이 많은 센터의 종사자들은 다문화 사업의 전면적



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유입이 2011년 이후처럼 완만하게 증가할 경우, 다문화 정책과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나감에 따라 교육과 정체성, 한국사회 적응에 집중해야한다는 의견들이다.

#### □ 결혼이주여성에서 이주아동으로 포커스의 전환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녀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유입되는 인구가 정착 초기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미 정착하신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이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한창 들어오실 때 그분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전후해서 고학년 넘어가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J)

아이들이 커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인데, 머지않아 그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확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애국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하는데, 한국아이들보다 뒤쳐져 있고, 엄마들은 돈 버느라 바쁘고. 우리지역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요. 미취학 아동이 가장 많고,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아지겠죠.(H)

지금 다문화가족 분들을 위한 정책은 어쨌든,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자녀교육에 관련된 것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조사 나오거든요. 부모교육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처럼 많이들 내려오기는 하고. 그런데 사실 그게 제일 쉽지 않기는 않은데, 가족들이 같이 좀 그런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고 하는 게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 같아요. (K)

인터뷰참여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아직은 미취학 아동의 수가 많기 때문에 대전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공교육체계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현실적 교육의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센터의 종사자들은 미취학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몰리는 시기가 되면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당황의 소리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2곳에서만 이런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자녀 성장지원이 생겼어요. 올해 핵심 사업이에요. 여가부에서도 핵심 사업이고요, 대전에서는 000구와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에는 없고요, 여가부에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자녀성장 당분간은 이 사업이 주력사업이 될 거 같고요.(I)

그리고 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자녀교육-양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이들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K)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확대

이 외에 센터의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정책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 이외에 다양한 이주 배경과 목적을 가진 이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유학생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 저희가 대상자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 결혼이주여성을 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여성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되고, 들어온 이주노동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여건들이 다양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만 그 이유 때문에 대상자 확대와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들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가 대상자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일부에서는 안 좋은 시선도 있겠지만,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I)

####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로 하는 지원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 종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인지하며, 대전광역시의 다문화 관련 자치예산 편성과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 □ 지자체 자체 예산편성의 필요성

충남에 23개의 센터가 있는데, 센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균 1억원. 그렇게 해서, 행복 가꾸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사업비 이외의 사업들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본사업비 밖에 안 되고.. 충청남도에서는 별개로 지원을 하니깐,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죠.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알아볼 수도 있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너무 아쉽죠.(G)

##### □ 실태조사의 필요성

실태조사는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항상 저희는 전국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욕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다음 회에 반영해서 사업계획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3년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죠. 대응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 같기는 해요.(J)

사실은 실태조사는 지역에서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곳 논산같은 경우에도 시의 사업비로 해서, 2~3년 전에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실태조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5명인지 6명인지 모르고, 자꾸 먹을거 같다고 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로요. 그전에 실태조사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실 그거 한번 해 놓으면, 전국에 실태조사 상관없이 해 놓으면, 그래도 적어도 10년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개발하고 하면 뭐해요. 기초조사가 없는데. 저희 현장에서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실태조사가 중요하

다고.(I)

정확한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사실 현재는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H)

저희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정보를 아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 정보니까 저희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예를 들자면, 결혼이민자 분께, 기초수급자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분들도 잘 모르세요. 남편 분들께 물어보거나, 남편 분들도 잘 안 알려주시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지원체계가 있다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지원에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은 100%로 맞춰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헤드리는 데에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때면 했던 분들에게만 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 예를 들면, 구청에서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 실태조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정보가 주민 센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전체적으로 통합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생활실태조사 부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K)

### 제3절 이주활동가 의견

대전지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 즉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주민 관련한 대전지역 민간단체의 활동은 결혼이주민(남성과 여성)과 이주노동자(남성과 여성, 등록과 미등록), 이주아동(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녀, 난민 등), 그리고 유학생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5개 단체 가운데 4개가 종교를 기반으로 1개는 노동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표 4-3> 이주활동가 인터뷰 현황**

인터뷰참여자	인터뷰 일정
L	2016년 10월 14일
M	2016년 10월 14일
N	2016년 10월 14일
O	2016년 10월 17일
P	2016년 10월 17일

## 1. 대전지역 이주노동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이주활동가들은 대전지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일터에서의 어려움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열악한 주거환경, 의료서비스의 부족, 쉼터의 부족,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성적 차원의 취약성 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현장과 거주지가 거의 겹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장소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모든 영역, 일상생활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다.

우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낡고 허름한 집 혹은 컨테이너에 거주한다. 오래된 동네에 낡은 집을 얻어 기숙사에 여러 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도록 한다. “집 한 채가 요만해요. 지금 우리 사무실 만해요. 방 이상한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신발장 있고, 찌그적거리는 대문 있고 20평 만한 집”에서 살다 병을 얻기도 하다. 야근과 주말 노동 등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혹은 병원에 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사소한 병을 큰 병으로 키우기도 한다.

시간이나 비용이외에도 거리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있다. 대전은 교통의 편이나 특성상 인근 논산과 금산, 옥천, 세종 등지에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모이는 허브와 같은 지역으로, 농촌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의료서비

스가 필요할 경우 찾는다.

### □ 열악한 주거 환경

노동자들 컨테이너에서 자고,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컨테이너에서 자도 된다. 열악한데 많아요. 창피한 사람(이주노동자)들은 (집에) 못 오게 해요. 이게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 집안의 가장이고 한데, 폐결핵 걸린 분도 있었어요. 같은 기숙사에 있던 분들도(걸릴 수가 있겠죠).(L)

###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약화

실제 현실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많고 한정된 벌이 안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게, 막상 돈을 쓰기가 어려워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감염 초기가 아니라 너무 늦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연락 받아요. 초기에 진료를 받으면 되는 데. 늦어져서 중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무료진료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나라에서 실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키워서 오시는 분도 더러있구요. 병원갈 형편이 안되니까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O)

여성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이나 주거 등의 어려움 외에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같은 위협에도 노출된다. 특히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일하는 농축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경우 고용주나 거주지 근처의 남성들로부터 성적인 눈길을 경험한다. 노동조건이나 생활면에서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의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나 남성보호자는 필요하기도 하다(김민정, 2011).

### □ 성적 위협

논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담을 하거든요. 농업쪽은 여성분이 많아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도 있고, 근로자 접근을 할 때 생산직과 농업직의 문제는 달라요. 여자의 경우 아무래도 소수이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에 취약하죠. 동티모르 사람도 한명 왔어요. 농장주가 열쇠가 없는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고, 논산이나 그런 쪽으로 갈수록... (L)

또 하나 최근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늘고 있는 상담은 ‘사업장 변경’에 관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허가가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주노동자는 등록이주노동자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체류자격의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등록에서 미등록으로 체류지위가 바뀌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대한 불안으로 삶의 안정성도 줄어들게 된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이 ‘사업장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이 이주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일터에서 노동을 강요받게 되면 근무지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연결되고, 무엇보다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와 무관하지 않다(손운석, 2013<sup>55</sup>).

## □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근로자상담건수가 많은 거는 사업장 변경관련해서 사업장변경시 고용주의 허가가 없으면 이탈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긴 해요. 내국인은 이직의 자유가 있잖아요. 거주지가 확실할 필요가 없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에 대한 것과 거주지에 대한 것과 두 개가 다 제약에 걸려 있죠.(L)

---

55) 손운석(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49권, 1-23

## □ 고용허가제로 인한 문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에 비해 인권적으로 나아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사업장변경에 관해서 이게 바뀐거거든요 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그리고 제도가 5년 미만 되면은 기간을 제한을 두잖아요. 영주권이라든지 체류에 대한 제한을 풀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봐요.(L)

## 2.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사업장 변경’의 제한은 민족과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보통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한국 입국 전에 사업주와 사업장을 결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의 회수나 조건을 제한하는 반면에, 한국계 중국인처럼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되는 ‘특례고용허가제’는 업종이나 계약조건, 산업영역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입국 전에 사업주를 결정하지 않는다. 즉 사업주와 사업장을 본 후에 일터를 결정한 권리가 외국국적동포에게 있다면, 보통 이주노동자는 입국 전에 가보지도 않은 사업장을 결정해야하는 의무가 있다(이현욱, 2015<sup>56</sup>).

특히 ‘국내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과 ‘정주화 방지의 원칙’,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 등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는 한국노동자와 경쟁관계가 아니라 모자라는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채우다가 돌아가는 인력이다. 이들은 한국에 장기체류를 해도 안되고, 산업구조가 변경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 시에 돌려보낼 수 있는 대체가능한 인력이다(설동훈, 2015<sup>57</sup>). 한국 민으로 혹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이주민으로 고려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이런 이유로 주거, 건강, 교육 등에 대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56) 이현욱(2015),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3호, 57-74

57) 설동훈(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제106호,



## □ 체류자격의 안정(등록과 미등록)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근로를 한 친구들요. 연장연장해서. 알기로는 10년 넘게 있는 사람도 있죠. 미등록이고. 못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격 면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줄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포용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와서 10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한다면 2,30대를 한국문화에 적응한거죠. 본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하기 어렵고, 중요한 거는 합법적 체류를 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정도 한국에 적응하고 체류하고 있다면 체류자격면에서 어느 정도.(L)

일할사람 없다고. 범죄인인양 취급하지말라. 인간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가운데 미등록이 석달만 일없으면 다 나간다. 설악산보러 온 애들이 아니에요. 석 달만 일 못하면 다른 나라로 가요. 안나가고 있다는 것은 일할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수를 넓히고 이 정도는 등록으로 하겠다 지금보다 수를 넓히고 이거를 넘어가는 것은 엄히 다스리겠다. 어쨌든 허용된 수가 한국사회가 물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숫자보다 적어요. (N)

대전지역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있다.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이주활동가들은 2천 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근의 농촌지역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대전의 특성으로 보아 대전을 자주 이용하는 미등록의 숫자는 많게는 1만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견해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지역의 경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 미등록이주자의 어려움

미등록이 많아요. 등록은 저 말고 해결해줄 사람 많아요. 대략적으로 대전지역 미등록 규모는 많아야 2천이라고 봐요. 만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2천이라고 봐요.(N)

곳곳에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금산농공단지 논산농공단지로 많이 빠지긴했어요. 다른 농공단지도 많을 겁니다만 어쨌든 차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데가

3,40분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금산과 논산이거든요. 홍성은 못가잖아요. 가지만 자주는 못가구요. 논산과 금산엔 정말 많아요. 대전지역, 1,2,3단 그 다음에 3,4,는 대공장이 많은 곳이라 안그럴거 같은데 노동자가 10명 내외인 공장에는 예외없이. 미등록이 있습니다.(N)

불법체류자도 다 오세요. 대전지역에도 많아요. 인원은 집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매주 10분 정도는 오시는 거 같아요. 2000내외 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대전과 근처에 살아요. 전국에서도 불법체류신분으로 여기로 올 수 있구요 공단이 많아서 가능해요.(O)

미등록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없어서 그런 외래진료나 간단한 것은 협력병원 통해 하면 되지만, 큰 수술 큰 질병의 경우, 엄청나죠 미등록은 자체로 보험가입이 안되죠. 엔지오나 교회기관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게 있긴해요. 그런 경우에도 큰 수술이라든지 보험료가 없으니까 몇 천만원 나오는 데 그걸로는 커버가 안될거예요. 한번 알아봐야 해요.(L)

체류의 불안정성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미등록’이 갖는 역설적 자유다. ‘등록’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엄격한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다면, 오히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고용주나 법무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일터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체류 장기화를 막기 위한 법과제도가 오히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이들의 장기체류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김민정, 2011<sup>58</sup>).

##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유의 역설

외국인노동자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체자로 신분 전환

58) 김민정(2011), 필리핀 노동 이주 여성의 일과 한국생활: 미등록 장기체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권 2호, 313-358

시키는 분도 많아요. 그냥 사업체 뛰쳐나와서. 그래서 왜 이러냐. 굳이 사업주가 뭐라 하고 폭력을 쓰고 급여를 제대로 안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회사를 바꿀 수 있다하면 ‘괜찮아요. 그냥 불법체류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등록이주노동자로)있으면 5년 되면 가야잖아요. 불법체류는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퇴직금 적립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 여기서 불법체류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급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P)

### 3.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

결혼이주여성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이 이주활동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자원,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 국적취득과 일자리 문제는 결혼이주여성, 특히 사별했거나 이혼, 별거한 이주여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주여성은 일자리가 시급하고, 자녀가 없는 여성은 당장 한국에서 쫓겨나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국적이 없고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이나 기초수급자지원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비국적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한국인 자녀를 양육한다는 양육수당이 전부이다.

#### □ 혼인 종결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불안정성

혼인파탄의 경우, 한부모가족도 안되죠. 남편하고는 이혼한 상태고 본인은 외국인이고 아들은 한국인이고, 아들만 돌보는 거고. 아이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지, 한부모 쪽으로는 어렵죠. 국적이 없어서.(L)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수도 적지

않다. 이는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대전지역의 이주민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주는 신뢰이다. 결혼이주여성 가운데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민지원센터를 찾고 있었다. 유학생 가운데도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지원센터를 찾아와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보증이 국적취득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안정적 체류와 신분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에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는 미등록이주민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여성 결혼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계세요. 국적 취득을 왜 이렇게 못하게 해서, 사별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구성원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는 놓고 너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요. 자녀가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자녀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야해요. 자녀가 있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런 사례들에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게 없어요.(P)

## □ 국적 취득의 어려움

저희 쪽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혼인파탄으로 인한 거주, 국내거주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귀화, 간이귀화시스템으로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 도망 나온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이 여성이 국제결혼 자체를 악용 한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서 있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은 국적이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국적이 시급하고, 생계를 운영해야 하니까. 아이는 어리고, 국적이 있으면 친정어머니 초대해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국적을 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간이귀화하려면 소득도 있어야하고, 아이를 키워야하는데, 호적이나 주민 법에 상관없이 귀화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간이귀화절차조차도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소득요건이나 양육권 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완화를 해줘야하는데.(L)

자녀가 없어도 5, 6년 이상 살았으면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했고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서 할게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이웃들도 생기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기반도 있고 해서 한국에 사는 게 좋은데, 고향은 정말 가기 싫은데 여기 있을 방법이 없냐고요. (국적이 없고 시댁식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미등록으로 체류하든가 돌아가든가. 가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P)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나 대전지역의 이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자녀양육과 교육, 그리고 생활비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는 본국에 있는 원가족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등의 사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게 이주활동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 □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는 다문화가정만 하나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한국어교육과 중도입국자녀서비스도 제공한다는데 거기에 멈춰있어요. 한국어교육. 그것은 일차적 문제예요. 한국어교육은 물론 해야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되지않아요.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인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바운더리로 들어오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성취감도 있어야 국민이라는 의식이 설텐데..다문화도 이런거 해주면 좋잖아요. 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정책들 추진하면.(O)

### 4. 대전지역 이주아동(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난민, 해외장기 체류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

대전지역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아동이 있다. 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소위, 다문화가족 아동이다.

그러나 최근 출신국에서 태어나 결혼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자녀나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양육문제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출신국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장기체류아동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난민아동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자녀도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대전지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아니 이들 어린이를 만나고 있는 이주활동가들이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국어교육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 또래친구들의 관계형성뿐만 아니라 교육과 진학 등 한국사회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언어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접근성도 가정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주활동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들 간의 한국어교육 접근성이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장기체류 및 중도입국자녀들과의 만남도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난민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에 이주활동가들조차도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하고 결국은 한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 □ 언어적 취약성-한국어 교육의 어려움

당황스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한국어 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 지 힘들었어요. 저희도 당황스럽죠. 학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늦어요. 3월에 11명이 시리아아동이 가고 한국어가 안 되는 다문화아동이 13명인데 행정을 보면 한학기가 다가도록 뒤늦게 쫓아가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죠. 3,4월에 상근자 배치를 했어야 하고.(M)

부모 만나 이야기하면 아이들 교육에 대해 너무 어렵대요. 요즘 지역아동센

터 가서 많이 서비스를 받지만 모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분들은 일부이고 그거서 소외되는 분들은 아이들이 한국어 말이야 하지만 글쓰기를 너무 못하니까 진학률이 너무 떨어져요. 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떨어져요 적응을 못해요. 그 사회에 못 들어가요. 한글 시작부터 늦으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발달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이 있으면...(O)

이주활동가들은 이주아동들이 학교와 지역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행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학교에서는 이들 아동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길 바라고 있다. 새로운 아동을 만나는 일에 대해 일선의 학교에서 더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교육대상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대한 학교와 교사들의 적극적 도전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이주아동이 자신의 문화(home culture)라고 생각하는 것과 언어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뱅크스(Banks, 2008: 135)는 전환적(transformative) 교실과 학교가 학생들이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기술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전환적 교실과 학교는 전환적 시민권 교육이 벌어지는 곳으로 전환적 시민교육(transformative citizenship education)은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정체성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으며 구성된다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식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전환적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소속된 커뮤니티와 국가, 그리고 세계 내의 불평등에 도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끄하는 전환적인 학문적 지식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청소년문화도 익히면서 청소년도 만나고 후견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해에 G1비자 받고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우리가 교육청과 학교에 전화해보면 다들 꺼려요.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문화시범학교가 있어

서. 그런 학교들에서 선생님과견하고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모셔와서 공부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꺼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저희가 통화를 했을 때 교감선생님이 우리학교에 와도 되는데 와도 지역의 대전의 몇 개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학교로 와도 다른 학교로 위탁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 그리로 보내는 거 어때요? 귀찮은 거예요. 계속 반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걸 보면서 아직까지는 중도입국이나 난민 자녀들에 대한 아직도 그런 수준이에요 이게 작년의 일이에요. 나라에서 정책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없어요.(O)

시급한 것이 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체성이나 사회성 형성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서은숙, 2016). 국민정체성을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nationhood)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 누가 국민인가를 스스로 규정하는 자기인식”으로 본다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스스로 한국인이자 한국시민으로 인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국적이나 시민권, 그리고 국민의 자격조건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새로운 정치학”에 대한 요청이다(황정미, 2010: 154).

## □ 정체성의 혼란

OO초등학교가 (전체학생이)300명밖에 안돼요. 다문화아이들, 외국국적 아이들이 37명이에요. 올해는 시리아난민아이들이 11명이고, 한국어가 안 되는 장기체류아이 1명, 중도입국자녀 1명, 한국어가 안 되는 아이가 13명인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동남아와 중동권은 너무 달라요. 언어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문화 자체가 너무 다르고... 청소년기에 엄마와 소통 안돼요.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서 온 한 애 빼고는 4학년 미만이에요. 굉장하죠. 통계를 보니까 미취학아동이 75%래요. 이제 막 올라가요.. 청소년기는 대전에는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애들도 부모랑 이야기 안하는데 다문화는 심각하죠.(M)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사례로 보면, OO씨네도 보면은 필리핀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본국자녀 4명을 데리고 왔어요.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한국인과 못 어울리고 필리핀과 어울리고 중도입국자녀에게 관심도. 점점 (새로운 이주아동들은) 늘어날 거예요.(L)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주활동가들은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엄마와의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이중 언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초국적 정체성 형성과 초국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까하는 고민을 했는데.. 엄마모국어 가르치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베트남 엄마들이 많으니까 베트남강사가 와서 쓰기 말하기 듣기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쳐요. 올해는 책도 2권 펴냈어요. 이중 언어하는 애들이 여기는 많아요. 평상시에 베트남어 쓰라고 해요. 금방 친해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긍심도 생기고 존재감도 생기고...(M)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아동들 가운데, 비(非)가시화되고 있는 범주도 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다.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태어나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미등록인 셈이다. 미등록이주아동이 학교나 지역사회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주활동가들은 한국어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시간에 이주노동자 부모를 따라온 미등록이주아동들을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 □ 미등록이주아동의 가족별거와 비(非)가시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이주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성모병원에서 도움을 받죠. 성모병원도 자체 예산이 아니라 병원의 사회적 팀에 프로포절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본인의 책임도 있으니까. 필리핀분들은 삼개월 내에 (아이를)다 보내더라고요. 저쪽 서울이나 경기도

아이들 돌보기도 하는데.. 일 년에 10건 미만이죠. 우리가 보는건...(L)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는 2015년 총 체류자 1,899,519명 가운데 11.3%인 214,168명이 불법체류자, 즉 미등록이주자로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는 2.94%로 대략 6,3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인터뷰참여자(가)가 말했듯이, 미등록이주자가 잘 드러나지 않듯이 이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였다. 대략 2만명이상의 미등록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NGO단체나 학계의 주장을 수용한다면(류유선, 2014), 대전지역의 미등록이주아동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등록이주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체류권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 다양하다(김현미·류유선, 2013; 류유선, 2014; 이영아, 2015).

미등록이주자녀는 있는데 안 나오죠. 저희에게 오는 친구들은 없는데 거의 같이 진료소 오거나 할 때 보죠, 이야기 들어보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데 학교는 갈 수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이런(외국인) 학교가 생기면 포용해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봐야하는 문제죠.(P)

#### □ 이주배경이 다양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

언어발달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통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요. 언어교육은 미봉책일 뿐이죠. 진학률만 높이는 거고 사회성을 높이면서 또래집단에 들어가게 하려면 심리적인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취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진학이 라든가를 상담해줄 수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이런 것에 지원해야하지 않을까..(O)

지역아동센터의 겨우 법적종사자가 있어요. 저희는 3명인데 아동복지교사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거 말고 추가로 배치를 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이지만 노하우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비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특별한 인력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교실 하나를 내줘서 계속 그 아이들과 씨름을 했으니까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M)

## 5.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

이주활동가들은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노동자 외에도 유학생들도 만나고 있었다. 이주활동가들이 만난 대전에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범죄 피해시 문제 해결, 그리고 교수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유학생의 경우 교수들의 번역의뢰가 많은 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 피해시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 □ 경제적 어려움

대전에 대학이 많으니까, (여기 오는)유학생들은 가톨릭 학생이 많아요. 예배 보러 오구요. 한국어 더 배우러 오고, 생활상의 문제가 생긴 친구들,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대전에 중국유학생 많은데 그들은 돈이 많고 그 외 개발도상국 친구들은 거의 장학금을 받고 오는데 생활비 면에서 힘들죠.(L)

### □ 범죄 피해시 문제해결의 어려움

성폭력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외국인이고 여학생이고 절차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학교에서 지원은 하는데 합의에서 뺏으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합의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로 간다고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국내법원도 빨리 끝내려고 하구요. 대전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 이걸 통역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성폭력 당한 피해자포함해서 이런 여성을 상담해줄 수 있는 상담가가 대전시에 있으면 좋겠어요. 의사나 상담전문가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어려워요.(L)

## □ 권력관계에서의 취약성

단기유학생도 있고, 석박사인데 정말 죽을 만큼 일을 해요. 교수들이 번역들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정신적으로 그렇고...(L)

## 6. 대전지역 다문화의 경계 확장과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주민 유입 역사가 길어지면서, ‘다문화’ 라고 불리는 이주민의 범주가 확장되고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도 커지는 현상이 대전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 관련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 그리고 이주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존에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그리고 그 자녀로 전형화 되었던 ‘다문화가정’ 의 다양성이다.

첫째, 사별, 이혼 및 별거로 인한 한 부모 다문화가정이다. 나이차가 많았던 부부의 경우, 남편과의 사별로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이다. 시대와 갈등이 있는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는 자녀와 원하지 않는 별거, 심한 경우 본국으로 쫓겨나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이다.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부모의 사정에 의해 엄마의 출신국에서 자라다가 한국에 돌아온 해외장기 체류아동들의 출현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후 엄마의 출신국에서 양육된 이유로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가정이다. 장기체류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부모들은 자녀를 본국으로 보냄으로써 자녀와 원치 않는 이별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키우는 경우 교육이나 의료지원 서비스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사별 혹은 이혼한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혹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생긴 다문화가정이나 유학생 가정 등 국적과 언어, 문화와 종교, 체류자격이 복잡한 지형을 그리는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대전지역에 있다.

## □ 다문화 가족의 경계

다문화와 이주노동자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룹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도상에서 다문화지원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죠. 발전된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들어가야지 국적이 어디냐라고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오히려 한부모로 들어가는 게 낫죠. 그들의 상태에 맞춰 지원하는 게 맞죠.(L)

근로자친구들의 아이들! 이제는 복잡해졌어요. 나누기가 사실 어려워요. 지금은 복잡해져서, 복잡해진 상태에서 결혼이주여성만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정책이 그렇게 가면 지금! 다양하게 생기고 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기입국자를 제외한 다문화가정을 포함할 수 없죠. 초기입국자는 와서 2,3년 내에는 가정이 파탄나지 않잖아요.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한국에 정착을 하니깐. 이런 상태에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이 이후에 다문화가정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 역시도 인종적 나눔이거든요. 다문화가정도. 다문화라는 말이 한국사회에서는 오염이 됐죠.(L)

저희가 상담해보면 한국인과 이혼하고 이주노동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고.(P)

대전지역에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 이주활동가들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다. 공교육이 차이와 다름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를 할 동안,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족과 인종, 국적과 언어, 종교와 문화 등 차이와 다름이 일상적인 것이 되는 공간에 대한 필요하다. 특히 중도입국자녀나 해외장기 체류아동들이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이를 줄이기 위

한 방편이다.

### □ 교육시설의 필요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문화적 차이를 해소 하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요.(L)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족 아이들 중도탈락률 높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거나 또 다른 외국인 학교가 되는 거죠. 대전에도 한남대학교 쪽에 외국인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다문화가족아이들을 위한 외국인학교죠(P).

### □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역량강화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이주활동가들은 결혼이주민을 포함해 이주여성들이 지역 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역량을 키워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경제적 자립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이주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경우에 사회적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정명희, 2009).

이주여성들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한국어 못하는 것도 아니고 5,6년 살면서 못하면 의지가 없는 거고 의지가 있는 분은 열심히 해요.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남편이 제법 돈을 잘 버는 경우도 그건 남편이 잘 버는 거고 여성이 사회생활을 해야, 조금 더 권익이, 사회구성원으로 들어가려면 경제생활이 중요한데 언제까지 한국어교육하고 문화체험하고 하겠어요. 여성도 가정 내에서 지위가 보장되고 함부로 대우도 안 받고 사회안에서도...(P)

다문화사회가 진전될수록 발생하는 갈등과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이주민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중요하게 논의된다. 이주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인식정도다. 특히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정책과 이주여성의 창업을 연구한 김경아(2012: 404)는 출신국에서 쌓은

무형의 자산이 한국에서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질적 문화에 개방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활용한 지역성장 모형을 제시하려는 도시정책 아젠다”가 있을 때 이주여성의 창업활동이 힘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도 하는데 시차원에서 왜 못하겠어요. 빈 건물에서 창업하게 도와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식당도 있고 다른 지역은 네일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향을 봐야하겠지만, 문화의 거리라도 만들어놓으면 현지식을 먹을 수도 있고 현지식을 한국식으로 만든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원도심을 살린다고 하는데 여기 놓고 있는 건물을 다문화거리로 만들며.. 시도 좋고 다문화결혼이주여성도 창업활동도 할 수 있구요.(P)

무엇보다도 이주여성이 창업활동에 의지를 높이게 되는 중요한 요소는 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관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김경아, 2012: 404).

## □ 내국인의 인식개선

국내 198개 시군구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정책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시군구가 176개, 다문화가정 자녀는 139개, 외국인 근로자는 66개, 재외동포는 20개, 유학생은 11개, 외국인 전문인력은 5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집행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이 여전히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2).

우리가 계속 분류를 하는데 법으로 대상이 되었을 때 법으로 하는데, 우리들 인식자체가 계속 쪼개잡아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대전에서 그분들만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주노동자 자녀건 결혼이주여성 자녀건. 별 차이가 없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중도입국자녀라든가 이주노동자건 상처가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사람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L)

#### □ 쉼터의 필요성

이주노동자 쉼터가 없는 것도 그렇고. 대전에 노동자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락이 와도 소개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어려운 것은 관리와 유지가 어렵거든요. 시에서 위탁을 해도 되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전국쉼터를 보니까 적절한 사이즈는 이층단독주택사이즈의 방3개면 친구들이 와서 이층침대 놓고 한방에 4,5명이 있으면. 20명 정도 수용가능하면 좋죠. 하루 이틀 머무르다 가니까. 삼개월안에 일자리를 찾아야하니까. 잠시 들렀다 갈수 있는 쉼터. 클 필요도 없고 게스트하우스처럼 차라리 운영도 가능할 거 같아요. 근로자의 경우 디시해주는 거죠 1박에 오천 원 해서.(L)

#### □ 지역연계

이주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이주활동가들은 정책과 사업의 영역에 대해 대전지역의 독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지역과 비교해 대전이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그리고 유학생 등의 이동이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이주단체들의 지원 대상과 범주는 대전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논산과 금산, 세종과 옥천, 멀리서 홍성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이주단체를 찾고 있다.

대전은 대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산금산세종조치원 등에도 이주자가 많아요. 연결해서 해야 해요. 미등록 중에는 일용직 많아요. 이제 통합적으로 가야해요. 경제면 경제 일자리면 일자리지원정책으로 통합적으로 가야해요. (L)

여기에 사시는 분은 별로 없고 이주여성은 많고 노동자는 신탄진이나 대화동에 많고 저희는 금산과 옥천 논산 세종에서 다 와요. 저희가 여기를 고집하죠.



기차 시내버스 지하철 접근성이 좋아서요. 여기는 모든 지역에서 다 오시니까.(O)

#### □ 마을 공동체와의 어울림

이주민과 내국민들 간의 접촉기회를 늘림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주민 축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대면이 증가함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는 계기들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 2012).

마을에서 이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것이 조성되어야 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도 이주민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가르치고 개별적 만남에서도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하고 외모적으로 표시가 나는 사람에게 먼저인사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공동체로 살거다 이야기를 하고 마을축제가 있었어요. 일 년에 세 번했거든요. 골목축제가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때 다문화부스를 운영해서 우리 엄마들이 참여해서 자기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장기자랑시간에 노래도 하고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는 때도 히잡 쓰고 가서 서빙도 하고..이런 것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죠.(M)

#### □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문화

이주민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지역민들은 이제 다문화가 정책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일하고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임을 인식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문화가 구체적으로 일상과 만나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의 아이들이 매일 모이는 곳,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와 가족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상적 다문화가 실행되는 곳이라는 깨달음이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허브역할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4천개 이상이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빨리 빨리 윈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생활 속에서 지역 안에

서 다문화를 보듬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지. 동네마다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건 보호자건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걸어가기 좋은데.. 버스타고 시간 내고 화장하고 가는 거보다 동네에서 부담 없이 쓱쓱 드나들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M)

#### □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2020년 되면 인구가 줄고 대학입학정원도 줄고 당연히 군 입대 인원 줄고 5년 뒤에 경제활동 인구 줄고 순차적으로.. 애를 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이끌고 가요 당연히 이주노동자죠. 숫자가 늘 수밖에 없죠. 관심만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N)

#### □ 국적취득의 개방성

제도적으로 좀 더 열려있어야 하는데 닫혀있어서 단일 민족 때문인가! 결혼 이주여성에 대해 시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해요.(P)

#### □ 민간단체와 대전시의 협력

이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에 밝은 민관학과의 협력을 추천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과 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연계는 중요하다(행정안전부, 2012).

진료소도 시차원에서 하면은 다른 것보다 진료소에서 하는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해줘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2차 진료를 가야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사회 사업하는 티오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협력병원에 전화 전화해서 하는데 시차원에서 예사편성을 하고 시스템을 해놓으면 저희에게 온 사람가운데 2차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시와 협력해서, 바우처 제도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쓸 수 있게 병원에서 활용하고, 병원에서는 그걸로 쓰고 시에 요청하고, 여러 가지 만들면 도와 줄 수 있는 건 많은데..(P)

## 제 5 장

---

###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 및 정책제언

---

제1절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

제2절 정책제언

---



## 제 5 장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 및 정책제언

제4장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그리고 이주 활동가들이 대전지역의 이주민을 만나거나 이들과 관련된 대한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의견과 경험, 인식의 변화 등에 대해 기술했다. 이번 장에서는 3장의 통계와 4장의 내용을 토대로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을 요약하고 그에 따라 대전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장의 정책제언은 대전지역에서 다문화 및 이주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 실행의 현장이나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 내의 변화에 대해 지역민의 위치에서 내놓은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1절 대전지역 이주민의 특성

#### □ 특색 없음이 특색

이주민과 관련한 대전지역의 특성은 ‘애매모호함’이다. 이주민 수가 많은 수도 권처럼 명확한 도시형이라고 말할 수도, 충청남도나 전라남·북도처럼 농촌형의 특색을 갖고 있다고 명시할 수 없는 것이 특성이다. 즉 도시형과 농촌형이 느슨하게 섞여 있는 복합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주 목적으로 살펴봐도,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 등 특정 범주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 □ 도시형 다문화

대전지역의 다문화의 특성은 ‘도시형’ 다문화라는 말로 수렴될 수 있다. 여기서 도시형은 이주민들이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집에 머무르거나, 농업이나 어업 등 부부 중심의 자영업 형태의 가족노동이 아니라, 임금활동을 위해 직장에 다니거나 다

니기를 희망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 가운데는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진 이주민의 비율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문화, 의료, 교육 등 인프라가 잘 마련된 도시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으며, 여기서 이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서, 농촌지역과 비교해 지역사회에서 고립의 정도가 낮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해 경제, 문화, 의료, 교육, 교통 등 서비스 인프라와 질의 문제는 존재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인근의 세종, 천안, 옥천, 논산 등 교류가 빈번한 충남의 타 지역과 비교에서 대전지역의 다문화의 특징은 도시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 □ 유학생 집단

2015년 대전지역 이주민 규모로 보면 유학생이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에 비해 가장 크다. 이는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지역 이주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다. 대전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해나갈것인가라는 문제제기는 지역주민의 감소와 우수인재의 유치라는 정책적 접근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다양한 이주민 가족 출현 및 이주민 내부의 계층화

인터뷰에 참여한 대전지역의 다문화 관련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이주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이주민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적으로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통합의 정책대상인 다문화가족 내부에서의 다문화가족의 다양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가족과 유학생가족, 그리고 난민 가족 등 다문화가족으로 포함이 가능한 다양한 이주민 가족도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내부에서 경제적 계급의 분화와 학업과 직업 등 계층적 분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내국인지역민과 이주지역민의 통합문제와 함께 이주민 자체의 통합문제도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 □ 지역 간 이주민 네트워크의 중심지

대전은 철도나 버스체계 등 대중교통의 체계에서 충남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볼 수 있다. 교통의 장점은 충남지역 이주민들이 대전지역에서 의료나 상담, 일자리 및 기타 정보 등 다양한 교류를 위해 대전지역에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나 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대전과 충남 지역이 통합 제공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 및 정책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해볼만한 지점이다.

## 제2절 정책제언

### □ ‘다문화’ 정책 대상의 확대

인터뷰에 참여한 총 16명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며 지역의 이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다. 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그리고 이주활동가들은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 개인별·직업별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다문화 공무원들이 다문화 개념과 다문화 정책의 대상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반면에, 이주활동가들은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중간에 위치한 듯 보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다문화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현실에는 동의했지만, 속도조절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민을 재생산하는 결혼이주민 외에도 한국인이 기피하는 영세사업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유학생과 난민 등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으로 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나 공부하는 유학생, 그리고 출신국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적 이유로 한국에 온 난민들까지로 다문화정책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이주민 관련 또 다른 조례인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는 거주외국인을 “대전광역시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의 ‘거주외국인’이라는 표현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체류자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한국사회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고, 이외에 투자이민이나 숙련기술과 정보기술 관련 전문직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보통 거주목적의 비자를 받는다. 이주목적에서 ‘거주’로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학업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 등의 경우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또한 ‘합법적’이라는 문구는 여러 이유로 혼인관계에서 벗어난 결혼이주여성이나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이나 난민 등도 조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라는 대전광역시의 두 개 조례는 결과적으로는 혈연과 결혼을 중심으로 이주한 외국인과 자본을 가지고 이주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하나의 조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외국인 주민’을 “충청남도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장함으로써,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난민과 유학생 등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합법 여부를 따지지 않음으로써 조례상으로는 미등록이주민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사별이나 별거, 이혼 등 결혼생활의 중단으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상실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체류기간 초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까지 대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에서 진행 중인 이주민의 수적 증가, 국적과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이주목적 등 이주민 내부의 다양성, 그리고 표준화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때, 다문화정책의 대상의 확대는 필요하고 그 시작은 조례의 개정으로 보여진다.

#### □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민 정책으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그 법과 제도가 국민의 경계에 포함할 수 있는 이주민의 기준을 고르는, 배제의 기준으로 작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이주의 증가는 국민국가의 경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시민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논쟁을 사회의 중심에 서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이 이

주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구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거라고 예상되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학생, 재외동포나 난민 등 장기체류하는 이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정책으로의 확대 필요성이다. 즉 지역에 체류하는 이주민 전체를 잠재적 한국시민이자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이들의 장기체류로 확산된 다문화담론이 정부주도하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제된 맥락은 한국사회에 퍼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다(심승우, 2013). 이처럼 특정 대상, 한국인을 재생산하는 결혼이주민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다문화정책이 이주를 배경하는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이민자와 국민간의 상호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갈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사회·경제·문화·정치적 포용”으로 정의된다(이성순, 2013: 163).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사회통합정책이라면 잠재적 한국시민이자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결혼이주민을 포함해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이주활동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방, 이주배경 아동과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유학생, 난민 등을 위한 의료, 심리지원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이 요구된다.

#### □ 지역 통합으로써 주민의 범주 확대

대전지역의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이주민은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써 결혼이주민 그 자녀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전지역의 거주민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거주민 감소의 비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는 이주민이었다. 매년 상당수의 내국인들이 인근의 세종시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다양한 이유로

이주하는 가운데 결혼 혹은 공부, 일자리를 목적으로 대전으로 이주민의 비율이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의 실제적인 증가에 따라, 노동현장이나 학교, 지역공동체에서 이주민과 대면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어나 문화교육으로 이들을 한국민으로 만들려는 국가주의적 시도보다는 지역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성숙한 다문화 인식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성숙한 다문화 인식은 결혼과 국적 같은 국민국가의 제도로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아니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들을 살고 있다는 공감각성으로 타자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은 타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지역의 주민이다(이용승, 2015). 주민은 지역과의 관련성, 실제적 거주를 전제하며, 지역과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람들을 이른다. 주민은 또한 지역과 심리적인 유대감을 일정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 있다. 심리적 유대는 당연히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주요한 일상생활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대개 지역과 일정한 정도의 심리적, 정신적 유착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이용승, 2014: 198)

대전지역에도 결혼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나 난민, 그리고 유학생의 규모는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성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포용적 통합은 삶의 기회가 확장됨을 의미하며 나아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통합은 “이주 수용국과 이주민 간의 상호적응 과정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양자를 묶어주는 일단의 핵심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의무감” 까지 나아가야한다(이용승, 2015:5 재인용). 주민의 범주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 대전지역 이주민 실태조사의 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

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다문화가족 가운데 표본가구 27,120가구에 대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대전지역의 응답률은 77.5%로, 조사에 불응한 이유는 사생활노출(56.0%)과 정부불신(16.0%)으로 나타났고,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가구에 아무도 살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비율이 대전이 22.4%로 타시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전지역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등의 이유로 가구 접촉이 불가능해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전국단위의 조사가 가지고 있는 객관성과 일반성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 및 이주민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만난 면접자들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해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안되고 수립되어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청된다. 지역의 다양한 이주민의 규모와 가족구성, 자녀, 직업과 경제적 상황, 취미, 문화활동, 종교 등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삶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의 결과는 향후 대전의 이주민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통합에 있어서 긴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 □ 지역사회 다문화인식 개선과 지자체 예산의 확보

실태조사든 대전에 필요한 이주민 정책이든, 조사와 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다문화와 이주민에 개방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수혜의 대상으로서 상정했다면, 이제는 동등한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나 이주민 예산이 사회복지정책

이 아니라 지역정책의 차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 □ 연구 한계와 추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대전지역 이주민 관련 기초연구로써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대전지역 이주민에 대한 다각적 통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현황과악에서의 정밀성을 갖지 못했다. 둘째, 이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그리고 이주민활동가의 의견으로 구성되었기에 이주민 당사자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분야,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많은 분야의 연구과제를 남긴다.

우선 실태조사에 앞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대전의 특이성을 발굴해내는 작업이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대전시청 등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훌륭한 분석은 분석자체로 다음 연구를 제안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장기 대전지역 이주민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대전지역의 이주민 현황과 특성이 분석되면, 이에 대응하는 이주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이 중장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범주 이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이주 아동 등 세부 범주들의 의견과 함께 이들과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통합한 중장기 대전지역 이주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석철(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문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성루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고상두·하명신(2012),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2집제5호, 233-256.
- 김경아(2012),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의지 결정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1호, 381-409.
- 김민정(2011), 필리핀 노동 이주 여성의 일과 한국생활: 미등록 장기체류의 역설, 한국문화인류학, 44권 2호, 313-358
- 김영옥(2007), 새로운 ‘시민들’의 등자오가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 46권 2호:129-159.
- 김용희(201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김현미·류유선(2013), 미등록이주민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재생산: 경기도 A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9집 2호, 53-84
- 낸시 프레이저(2010), 지구화시대의 정의-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 옮김, 그린비.
- 류유선(2014), 가구화의 관점으로 본 미등록이주아동의 귀환결정, 민족연구, 60권, 24-49.  
(2015), 가구화(Householding) 과정에서 나타난 미등록이주여성의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김정환 옮김, (주)미래엔.
- 마이크 더글라스(2010), 전지구적 가구화(global householding)의 관점에서 본 한국, 일본, 대만의 이주와 사회 변화에 관하여, 도시인문학연구, 제 2권 1호, 203-251.
- 미셸 푸코(2002),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옮김, 동문선.
- 박종필(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국제다문화대학원 석사논문
- 박혜경·이재경(2010), 「탈빈곤 전략으로서 이주결혼의 역설: 한국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2(4), 33-62쪽.
- 서보건(2013), 다문화사회와 헌법상 국민개념의 변용, 유럽헌법연구 제13호, 293-320.

- 서은숙(2016), 중도입국(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 윤리연구, 제106권, 275-304.
- 설동훈(2015),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경제와 사회, 제106호.
- 세일라 벤하비브(2008),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이상훈 옮김, 철학과 현실사.
- 손윤석(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49권, 1-23
- 스티븐 카슬 & 마크 J. 밀러(2013),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일조각, 93-95 요약, Babcock, 1991:28 재인용.
- 심승우(2013),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1): 175-205.
- 장 보댕(2005), 국가론, 임승휘 옮김, 책세상.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보고서
- 우복남(2012),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유은주(2010), 내가 시집을 온 건가, 일을 하러 온 건가: 여성결혼이주자의 노동자성 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10(1), 199-245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담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기타간행물, 251-291.
- 윤택림(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아르케.
- 이경선(20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이다숨(2016), 불법성의 일상화: 안산 이주민 집주지역 미등록이주민의 삶의 전략,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이성순(2013),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거(A. Ager)와 스트랭(A. 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사회과학연구 24(3): 161-185.
- 이영아(2015),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이용승(2014), 다문화시대의 시민권 아포리아, 한국정치학회보, 48(5), 185-206  
(2015),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 이주인권지역토론회-이주민 지역사회통합현안과 인권 쟁점(2015년 11월 13일 토론회 자료집), 3-19.
- 이혜경(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118 재구성, 104-137.
- 이현욱(2015), 한국 고용허가제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8권3호, 57-74
- 장명선(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명희(2009),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변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논문.

- 조르조 아감벤(2008),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출판사.  
 (2009), 예외상태, 김향욱김, 새물결출판사.
- 최병두 외(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최혜지 외(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제2조 2항, 난민법 제2조 1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2015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6),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 칼 슈미트(2010), 정치신학, 김향역, 그린비.
-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157-193.
- 행정안전부(2012), 2012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호미 바바(Homik Bhabha)(2002),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통권, 제53권 제4호, 152-184.
- Banks, A. James(2008), Diversity, Group Ident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a Global Age, Educational Research 37, No.3. pp.129-139.
- Hollifield, James, F.(1992), Immigrants, Markets and States: The Political Economy of Postwar Europ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The Emerging Migration Stat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3), 885-912.
- Lee, Sang Ji(2015),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Local-based Migrant Policy, IOM MRTC Working Paper Series. No. 2015-06.
- Sassen, Saskia(1996), Losing Control?: sovereignty in an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Guests and aliens, New York: New Press

#### 인터넷자료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http://www.socinet.go.kr/soci/contents/PgmIntrPurp.jsp?q_global_menu_id=S_SIP_SUB01)), 검색일: 2016년 3월 29일.
- 법무부 보도자료, 2011년 2월 16일자, “법무부, 우수외국인 재선정을 위한 국적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우수인재 평가기준 마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6월호 표지.



법무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0일자,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인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4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검색일: 2016년 3월 29일.

연합뉴스, 2016년 11월 1일자, “캐나다, 이민문화 활짝... 내년 경제이민 17만명 등 30만명 수용”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4/001435/143557e.pdf>, 검색일: 2016년 7월 15일.

<https://www.iom.int/key-migration-terms>, 검색일: 2016년 4월 19일



연구보고서 2016-07

---

---

대전지역 체류 이주민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http://www.dsi.re.kr>

---

인쇄: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TEL 042-224-2030 FAX 042-367-5203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